

<https://www.coursera.org/learn/american-law/supplement/uRsWx/syllabus>

**Constitution**

The most fundamental law of a country or state (<http://www.law.cornell.edu/wex/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the supreme law of the United States. Empowered with the sovereign authority of the people by the framers and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s of the states, it is the source of all government powers, and also provides important limitations on the government that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United States citizens. (<http://www.whitehouse.gov/our-government/the-constitution>)

헌법

국가 또는 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http://www.law.cornell.edu/wex/constitution).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은 미국의 최고 법입니다. 선견자에 의한 국민의 주권과 국가 입법의 동의에 힘 입어 모든 정부 권력의 원천이며 미국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에 중요한 제한을 제공합니다. (http://www.whitehouse.gov/our-government/the-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The broad topic of constitutional law that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미국 헌법의 해석과 시행을 다루는 헌법의 광범위한 주제.

Key Terms:

**Articles of Confederation**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information, explore this

연합 기사

미국 최초의 헌법.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website: <http://www.loc.gov/rr/program/bib/ourdocs/articles.html>.

**Bill of Rights**

The first t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which set out individual rights and liberties (<http://www.law.cornell.edu/wex/bill_of_rights>).

권리 장전

개인 권리와 자유 (http://www.law.cornell.edu/wex/bill\_of\_rights)를 규정 한 헌법 개정안의 처음 10 개 조항.

**commerce power**

Congress has the power to regulate the channels and instrumentalities of interstate commerce. Channels refers to the highways, waterways, and air traffic of the country. Instrumentalities refers to cars, trucks, ships, and airplanes. Congress also has power to regulate activities tha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interstate commerce <http://www.law.cornell.edu/wex/commerce_power>). The Commerce Clause refers to Article 1, Section 8, Clause 3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gives Congress th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For more, click here: <http://www.law.cornell.edu/wex/Commerce_clause>

상업력

의회는 주간 상업 거래의 채널과 수단을 규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채널이란 국가의 고속도로, 수로 및 항공 교통을 의미합니다. 계기는 자동차, 트럭, 선박 및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의회는 또한 주간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규제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law.cornell.edu/wex/commerce\_power). 상거래 조항은 미합중국 헌법의 제 1 조, 제 8 조, 제 3 항을 언급하며 의회에 "외국과의 상거래를 통제하고 여러 국가와 인디언 부족과의 거래를 규제 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www.law.cornell.edu/wex/Commerce_clause>

**Due Process**

Phrase found in both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that no one shall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These words have as their central promise an assurance that all levels of American government must operate within the law and provide fair procedures. For more, click here: <http://www.law.cornell.edu/wex/Due_Process>

적법 절차

다섯 번째와 네 번째 개정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사람도 "합법적 인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 이 말은 모든 수준의 미국 정부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해야한다는 확신을 중앙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www.law.cornell.edu/wex/Due\_Process

**Equal Protection**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prohibits states from denying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In other words, the laws of a state must treat an individual in the same manner as others in similar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or more, click here: <http://www.law.cornell.edu/wex/equal_protection>

균등 보호

미국 헌법 제 14 차 수정안의 평등 보호 조항에서는 주정부가 관할권 내의 어떠한 사람도 법의 평등 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국가의 법률은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을 다루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www.law.cornell.edu/wex/equal_protection>

**executive power**

Article II of the Constitution outlines the duties of the Executive Branch, which is headed by the President. For more, click here: <http://www.law.cornell.edu/wex/executive_power>

행정권

헌법 제 2 조에는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http://www.law.cornell.edu/wex/executive_power>

**Framers of the Constitution**

Delegates hailing from all the original states except Rhode Island gathered in the Pennsylvania State House in 1787 to participate in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Many of the delegates had fought in the American Revolution and about three-fourths had served in Congress. The average age was 42. (<http://constitutioncenter.org/learn/educational-resources/founding-fathers/>)

헌법의 수비대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원주민의 대표는 1787 년 펜실베이니아 국회 의사당에 모여 헌법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대의원 중 다수가 미국 혁명에서 싸웠으며 약 4 분의 3이 의회에서 봉사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42 세입니다. (<http://constitutioncenter.org/learn/educational-resources/founding-fathers/>)

**incorporation**

Though the Bill of Rights originally only applied to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this legal doctrine, portions of the Bill of Rights are applied to the states through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http://www.law.cornell.edu/wex/incorporation_of_the_bill_of_rights>)

혼입

권리 장전이 원래는 연방 정부에만 적용되었지만 이 법적 원칙을 통해 권리 장전의 일부가 14 차 수정안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 주에 적용됩니다. (<http://www.law.cornell.edu/wex/incorporation_of_the_bill_of_rights>)

**judicial review**

The idea that the actions of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of government are subject to review and possible invalidation by the judicial branch. Judicial review allows the Supreme Court to take an active role in ensuring that the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abide by the constitution. (<http://www.law.cornell.edu/wex/judicial_review>)

사법 심사

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동이 사법부에 의해 검토되고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생각. 사법 심사를 통해 대법원은 다른 정부 기관이 헌법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cornell.edu/wex/judicial_review>)

**political party**

Group of persons organized to acquire and exercise political power. Formal political parties originated in their modern form in Europe and the U.S. in the 19th century. Whereas mass-based parties appeal for support to the whole electorate, cadre parties aim at attracting only an active elite; most parties have features of both types. All parties develop a political program that defines their ideology and sets out the agenda they would pursue should they win elective office or gain power through extraparliamentary means. Most countries have single-party, two-party, or multiparty systems (see party system). In the U.S., party candidates are usually selected through primary elections at the state level.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olitical party](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olitical%20party))

정당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기 위해 조직 된 사람들의 집단. 공식 정당은 19 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근대적 인 형태로 기원되었다. 대중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전체 유권자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반면, 당원 당은 능동적 엘리트만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한다. 대부분의 당사자는 두 가지 유형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의하는 정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출직 사무소에 당선되거나 외교의 수단을 통해 권력을 얻는다면 그들이 추구 할 의제를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1 인당, 2 인당 또는 복수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시스템 참조). 미국에서는 정당 후보가 보통 주 차원에서의 예비 선거를 통해 선정됩니다.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olitical party)

**separation of powers**

Political doctrine of constitutional law under which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are kept separate to prevent abuse of power. Also known as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each branch is given certain powers so as to check and balance the other branches. (<http://www.law.cornell.edu/wex/separation_of_powers>)

권력 분리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정부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가 분리 된 헌법에 관한 정치적 교리. 수표와 저울 시스템으로도 알려져 있는 각 지사에는 다른 지사를 확인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있는 특정 권한이 주어집니다. (<http://www.law.cornell.edu/wex/separation_of_powers>)

**Taxing Power**

Congress has power under Article I, Section 8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and general welfare. Under the 16th Amendment, Congress can collect taxes on incomes that are derived from any source. As long as Congress has the power to regulate a particular activity that it wishes to tax, it can use the tax as a regulating device rather than in order to raise revenue.

세제 권력

의회는 제 1 조, 제 8 조에 따라 세금, 의무,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어 및 일반 복지를 제공 할 권한을가집니다. 의회는 16 번째 수정 조항에 따라 모든 출처에서 파생 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특정 활동을 규제 할 권한을 가진 한,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세금을 규제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cornell.edu/wex/taxing_power>)

**Supplemental Reading**

• The U.S. Constitution

• The Constitution from President Obama White House Archives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 History"

• "Our Constitution"

Excerpt from Westlaw's Black Letter Law Outline: Constitutional Law

보충 독서

• 미국 헌법

•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기록 헌법

• "미국의 헌법 : 역사"

• "우리 헌법"

Westlaw 's Black Letter Law에서 발췌 개요 : 헌법

Property-law-part-1

|  |
| --- |
|  |
|  |

|  |  |
| --- | --- |
| Welcome to this segment of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on the US Constitution. I'm standing here in the reading room of Penn Law School's library just a few miles from where the constitution was framed over two centuries ago. In the city of Philadelphia. My name is Theodore Ruger. I'm a professor of constitutional law and health law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And my segment today will focus on various features of the US constitution's distinctiveness. I'll begin by asking the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nd focus specifically on the distinct place of American Constitution and American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Scholars and visitors to the US have long recognized the US Constitution as unique. Going back almost 200 years, Alexis de Tocqueville, on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remarked specifically about America's unique constitutional culture. De Tocqueville observed, the obligation to base decisions on the Constitution as opposed to the law was peculiar to the American judge, at the time he visited. What he meant in this is that many countries, of course, had common law regimes and statutes. But, when De Tocqueville visited the US the US was unique in it's written Constitution. Much later, in marking the Bicentennial of the US Constitution in 1989, Time Magazine released a special issue in which it called our Constitution a gift to all nations. And proclaimed proudly that 160 of the 170 nations then in existence. That modeled their constitution upon our own. Around the same time, Guido Calabresi leading scholar, dean of, former dean of Yale Law School and a judge, described th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as our quote constitutional offspring. I'll explore these themes in this segment. And while it is true that the US Constitution is distinctive. What we'll see is that if, if other countries are our constitutional offspring, as Judge Calabresi has said, they're an offspring that have take a very different path in some key ways then the US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is segment I'll explore four different major themes. First, I want to talk about the basic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ong history of interpretation that has taken place in American legal culture, which itself is virtually unique in the world and forms a unique and distinctive aspect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Then I'll look at a few diff, different kind of broad clusters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structures. First, the manner in which our constitution divides government and it divides it twice. **Both vertically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en horizontally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into the different branches of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And I'll explore some current debates that resound even today about the proper allocation of those different governmental structures. I'll then turn to what many of us think about when we think about the constitution, namely the individual rights that we hold dear, and that government and the courts struggle to mediate and strike the proper balance in, in applying things like freedom of religion. The right to be free of race discrimination. The right to bare arms, the right to assemble as we choose. All of these form a core part of the american constitutional tradition. And although we don't have time in this segment to explore each one in great detail, I'll explore some general themes that I think cluster around the general area of independent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in the American tradition. Finally, I'll conclude by talking about the US Constitution's distinct influence in the world. And the manner of which many other countries that have recently adopted written constitutions somewhat along the US model have chosen different paths and gone in different directions then, then the US has in ways that I, then in turn shines a light on what's truly unique about the American experience. Now I'll turn to the first substantive section of this segment, which deals with the Constitution's basic text, history, and interpretation. Some general themes that guide us as we think about the Constitution in specific applications to individual rights areas. The first most basic question we might think about. And one, it's one that people have been struggling about for the entire life of the US Constitution, is what is the US Constitution. Where is it? Where do we find it? Now, at first glance we might think that's a very simple answer. Of course, we have a written constitution. It has a text. And we might say, well, that's it and that's all there is. | 미국 헌법에 관한 미국 법률 입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 세기 전 헌법이 수립 된 곳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Penn Law School 도서관의 독서실에 서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시. 제 이름은 Theodore Ruger입니다. 나는 펜실베이니아 법대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의 헌법 및 건강 법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헌법의 다양한 특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기본적인 질문 인 미국 헌법과 미국 헌법이 무엇인지 물어 봄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미국 헌법과 미국 헌법 개발의 분명한 장소에 중점을 둡니다. 학자들과 미국 방문객들은 오랫동안 미국 헌법을 독창적 인 것으로 인정 해왔다. Alexis de Tocqueville은 약 200 년 동안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독특한 헌법 문화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De Tocqueville은 그가 방문했을 때 미국 법관 특유의 헌법에 의거하여 헌법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많은 국가들이 물론 공통 법 체제와 법령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De Tocqueville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독창적 인 헌법 문서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1989 년 미국 헌법 200 주년 기념일에 타임지 (Time Magazine)는 우리 헌법을 모든 국가에 선물로주는 특별한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0 개국 중 160 개국이 자랑스럽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헌법을 모델로했습니다. 같은시기에 Guido Calabresi의 수석 학자이자 Yale Law School의 전 학장이자 판사 인 Jean Calabresi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우리 헌법의 후손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분야에서이 주제들을 탐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이 독특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가 헌법 재판소 인 경우, 칼라브레시 판사 (Calabresi) 판사가 말했듯이, 그들은 미국 헌법 개발과 같은 핵심적인 방식으로 매우 다른 길을 걷는 자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4 가지 주요 테마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기본 문안과 미국 법률 문화에서 일어난 오랜 역사의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하며 미국 헌법주의의 독특하고 독특한 측면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헌법상의 권리와 구조에 관한 광범위한 종류의 다른 종류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헌법이 정부를 분열시키는 방식과 그것을 두 번 분열시키는 방식.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세로로, 그리고 연방 정부를 가로 질러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서로 다른 지점으로 수평 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정부 구조의 적절한 분배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주고있는 현재의 논쟁들을 탐구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헌법, 즉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법원은 적절한 균형을 중재하고 투쟁하기 위해 투쟁하며, 자유의 종교. 인종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 맨손으로 팔 권리, 우리가 선택하는대로 조립할 권리. 이들 모두는 미국 헌법 전통의 핵심 부분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이 분야에서 각각의 주제를 자세히 탐색 할 시간이 없지만, 미국 전통에서 독립적 인 개인 권리 보호의 일반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주제를 탐구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계에서 미국 헌법의 뚜렷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결론을 맺을 것이다. 최근 미국 모델에 따라 서면 헌법을 채택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다른 경로를 선택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런 다음 미국은 내가 진정으로 독특한 점을 밝혀 준다. 미국 경험. 이번에는 헌법의 기본 텍스트, 역사 및 해석을 다루는이 부문의 첫 번째 실질적인 섹션을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 권리 영역의 특정 적용에서 헌법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주제. 우리가 생각할 수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이 미국 헌법의 전 생애 동안 고투하고있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 헌법입니다. 어디 있니?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언뜻보기에 우리는 그것이 매우 간단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서면 헌법이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것이 그 것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
| As I'll assert in the next few minutes, I think that is dramatically wrong, both in, as a descriptive matter of the way the Constitution has been interpreted and as a normative matter of how we ought to interpret it. But, let's talk about the text and the history a bit to start out with. I hold in my hand here the full text of the constitution in this little booklet. It's a booklet I picked up at the Supreme Court many years ag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you'll see this is a slim document and as I'll, I'll describe in, in detail in a few minutes, this is the world's shortest constitution. And the, the brevity of our constitution itself is it self important, and it creates a kind of interpretative imperative. These words in this little document are often vague and unspecified, and they don't interoperate themselves. And much of what the american constitution tradition has been over the past many centuries, has been an effort to translate and give content to these very sparse and undefined words. So we might say, where is the Constitution? Is it in the text? I would say, yes it is. But it's not fully embodied in this tiny little, little booklet that I hold in my hand. Where else might we look then? We do need to think about the text and the text is one thing that endures. But as we look at the his, history of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we see the, the role of time. And here I mean the several centuries that this constitutional text has been with us, is important, and is foundation in how we think about the document. The document stays with us, but **our we as a people change over time.** And **that inflects and affects the way we interpret the document.** And we can see real life examples in the Supreme Court of the way the court itself changes in its own interaction with the document. We also have a crucial role in, in American history in the institutions that shape and contest constitutional meaning. When we talk about those institutions, obviously the primary institution we talk about i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 group of, these days, nine unelected judges who sit in Washington DC. Originally for much of the nation's history the court had fewer than nine. Justices but we, we, when we talk about constitutional meaning we need to look beyond the court and think about all of the other institutions in our civic society that that participate in interpretation. Legislatures, indeed in the early days it was primarily legislatures. and, non judicial actors that participated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executive branch, certainly at the federal level as well as the state level is a focal point where the vast majority of decisions about constitutional rules are made much more so than the very few cases that reach into the supreme court. And then much more broadly, and in ways that constitutional scholarship has started to take account of within the last decade or two, these words at the bottom come right from the constitution itself, We the People, the American people in all of our kind of diverse and often contested debates over constitutional meaning. **We play a leading role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nd in updating its meaning through the generations over the past two centuries**. Let me say a bit more about the tax and history by bec, returning to where these all started just a few miles from where I stand here today. In the old city of Philadelphia here in this building called Independence Hall. It's important to note, and then very important for the American constitutional story that the framers of this country, and of the Constitution, met here twice, separated by more than a decade. They met in 1776 while still pull, part of the British Empire to frame a document that's central to our. Political tradition call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claring that this nation would, would, would form free of Britain and and chart a course as a new nation. And we celebrate that day, July 4th, 1776. One day we don't celebrate is July 12th, 1776. Because afte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ich we all remember, the framers sat around, and they drafted a constitution for this new nation. It's call, it was called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it was, that was draft was issued and initially approved by an initial vote on July 12th, 1776. Now today, that is not a date we celebrate in United States history because the original constitution. Was, in many senses a failure. And so the framers had to come back again in 1787 to essentially do version 2.0 of the constitution. And this is important for the way we think about the constitution, because we, our constitution that endures with us today then, was born out of a failed experiment in constitutionalism called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What was wrong with the articles? They created a government that was too weak. There was no central executive, there was insufficient power to tax and on, at the national level there was insufficient ability to reign in the self interested and counter productive behaviors of state governments that would do things like enact their own internal tariffs. Engage in their own foreign policy. and, and things of that sort. Simply put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was no way to run a serious nation state. | 앞으로 몇 분 안에 주장 할 것이지만, 저는 그것이 헌법이 해석 된 방식의 기술적 인 문제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로서 극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텍스트와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 봅시다. 나는이 작은 책자에 헌법의 전체 내용을 여기에 내 손에 쥐고있다.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수령 한 소책자입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보시다시피이 문서는 슬림하고 제가 몇 분 안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자체의 간결함은 스스로 중요하며, 일종의 해석 적 명령을 창출합니다. 이 작은 문서의이 단어들은 종종 모호하고 불특정하며 상호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세기 동안 미국의 헌법 전통이 지켜온 것의 대부분은 이러한 매우 드문 드문하고 정의되지 않은 단어를 번역하고 내용을 전달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이 작은 작은 책자에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외 어디에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텍스트와 텍스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시간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이 헌법 본문이 우리와 함께하고 수 세기 동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문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초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와 함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변화합니다.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영향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 자체가 문서와의 상호 작용에서 변화하는 방식에 대해 대법원에서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상의 의미를 형성하고 논쟁하는 기관에서 미국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요 기관은 미국 대법원입니다. 요즘 워싱턴 DC에 앉아있는 9 명의 비 선출 된 판사입니다. 원래 전국 역사의 대부분을 위해 법원은 9 명 미만이었습니다. 재판관들 그러나 우리는 헌법 적 의미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법원을 넘어서서 해석에 참여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모든 기관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실제로 초창기에는 주로 입법부였습니다. 및 헌법 해석에 참여한 비 사법 행위자. 행정부는 물론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확실히 헌법 규칙에 대한 결정의 대다수가 대법원에 도달하는 극소수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헌법 장학금이 지난 10 년 또는 2 년 이내에 고려되기 시작한 방식에서, 맨 아래에있는이 단어들은 헌법 그 자체 인 우리 인민, 모든 종류의 미국 국민들로부터옵니다. 헌법상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종종 제기된다. **우리는 헌법을 해석하고 지난 2 세기 동안 세대를 거쳐 의미를 새롭게하는 데 선도적 인 역할을합니다**. 벡에 의해 세금과 역사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여기서 모두 내가 오늘 여기에 서있는 곳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밖에 안되는 곳으로 돌아가 보도록하겠습니다. 이 건물에있는 필라델피아의 구 시가지에 독립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과 헌법이 두 번 만났을 때, 10 년 이상으로 분리되었다는 미국의 헌법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76 년에 만났지만 대영 제국의 일부로 우리 문서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정치적 전통은 독립 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불렀고,이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며, 새로운 국가로서 코스를 계획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 1776 년 7 월 4 일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축하하지 않는 어느 날은 1776 년 7 월 12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있는 독립 선언 이후에, 작곡가들은 주변에 앉아서이 새로운 국가를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 그것은 부르다, 그것은 연합의 기사라고 불렸다. 그리고 초안이 발행되어 1776 년 7 월 12 일 최초 투표에 의해 처음 승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미국 헌법 때문에 미국 역사상 축하를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많은 감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은 본질적으로 헌법 제 2.0 판을하기 위해 다시 1787 년에 돌아와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와 견디어내는 우리의 헌법은 연합 조항이라고하는 헌법에서 실패한 실험에서 태어 났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너무 약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중앙 집행관이 없었고, 세금을 부과 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국가 차원에서 자체 내부 관세를 제정하는 것과 같은 일을하는 주 정부의 자기 관심 및 반 생산 행동을 통제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외교 정책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 간단히 말해서 연합의 기사는 심각한 민족 국가를 운영 할 수있는 방법이 아니 었습니다. |
| And when the so the framers when they gathered in 1787 were trying to do two. Things which are, were in tension then and remain in tension and create some of our greatest constitutional debates. They were trying to structure a government that was restrained and protected individual liberty. And the, these, those values remain important and central to, to our constitutional tradition. But at the same time, keeping in mind the failures of the Articles of the Confederation. They were trying to create a government that worked, and that had the strength and efficiency and capability to address national problems on a national scope. So, it's these conflicting impulses that we see today, even in debates say, over the new Affordable Care Act passed a few years ago. Which attempts to address national problems of health care on a national scale. And which has generated constitutional debate over individual liberties. Even as it tries to address pressing health problems. These debates don't go away. They are essential to our constitutional culture. And they, in a sense, date all the way back to these beginning principles where the Framers tried to do, to do two very different things. The most important Founding Father, James Madison, was aware of this internal tension and expressed in, in writings. In important writings called The Federalist Papers. So Madison said in Federalist fifty one. Quote in framing a government which is to be administered by men over men, the great difficulty lies in this. You must first enable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government, and in the next place, oblige it to control itself. Consider Madison's words in the context of our present, present debates today which bear the same internal tension. First, we want a government that is strong enough robust enough to control the governed, governed and, and effectuate legitimate solutions to the problems we face as a nation. But we also want a governmental structure and we want a constitution that controls the government itself and protects individual liberty, and structures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in a way that. Promotes the optimal functioning of our democracy. These are the things that the men who met here over two centuries ago struggled with and attempted to strike a balance with. And it's the very same balance that in our own constitutional debates and interpretation we attempt to strike today. Let me now turn to some specific choices the framers made in 1787 about the document itself that still have major interpretation implications for the way we think about the constitution. So what is unique about the actual text of the constitution? The first thing that's unique, and that we take for granted a bit,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now, finally. Followed our lead on but was very unique in 1787 was the very fact of a written constitution. Lots of countries including perhaps most notably Great Britain, have long constitutional traditions. But until very recently those tradi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ulture and rules of those societies. Were not captured and collected and written in a single short document. Another unique feature about the US Constitution is not just **that it was written but how few words the framers used in their writing of it.** **The Constitution comes in at just over 4,000 words**, which is remarkably short by comparison to other constitutions in the world. Compared to the longest constitutions we see both around the world and in our own state governments. The US Constitution is remarkably short, again, at just over 4,000 words. By comparison, the Constitution of the nation of India in it's English language version is almost 120,000 words long and even that isn't the longest constitution that we have in this library. That would be the Constitution of our own state of Alabama. Which clocks in at over 300,000 words. By this standard of course, then to use a few thousand words as the framers of the US Constitution did to set up an entire government structure is incredibly sparse. And that very brevity, I has clear interpretive interpretations. | 그리고 그들이 1787 년에 모였을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두 명을하려했습니다. 긴장 상태에 있고 긴장 상태에 빠져 있으며 우리의 위대한 헌법 논쟁을 일으키는 것들. 그들은 억압 받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 한 정부를 조직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헌법 전통에있어 중요하고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합 조항의 실패를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일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힘과 효율성 및 역량을 갖추고있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통과 된 새로운 저렴한 의료법 (Asordable Care Act)에 대한 논쟁 에서조차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러한 상반된 충동입니다. 국가적 규모로 보건 의료의 국가적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이러한 논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헌법 문화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면에서 프레이머가 시도한이 초기 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가 두 가지 다른 일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국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은이 내부 긴장을 인식하고 글에서 표현했습니다. The Federalist Papers라고하는 중요한 저서에서. 그래서 Madison은 Federalist 50 세에 말했다. 남성보다 남성이 관리해야 할 정부를 구성하는 데있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정부를 통제 할 수있게해야하며, 다음에 정부를 통제해야합니다. 오늘 같은 내부 긴장을 겪고있는 현재의 현재 논쟁의 맥락에서 매디슨의 말을 생각해보십시오. 첫째, 우리는 국가로서 직면하게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 통치 및 합법적 인 해결책을 통제하기에 충분히 견고한 정부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정부 구조를 원하며 우리는 정부 자체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을 구성하는 헌법을 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최적 기능을 촉진합니다. 이것들은 2 세기 전에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파업을 시도하는 우리 자신의 헌법 토론과 해석에서와 똑같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제는 1787 년에 작성한 프레이머가 문서 자체에 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선택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헌법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 독특합니까? 독특하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첫 번째 일은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야 마침내 얻었습니다. 우리의 단서를 따라 갔지만 1787 년에 매우 독특한 성문 헌법의 사실이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근까지 이러한 전통과 그 사회의 헌법 문화와 규칙. 캡처되지 않고 수집되어 하나의 짧은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관한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그것이 작성된 것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작성한 단어가 얼마나 적은지에 있습니다. **헌법은 4,000 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세계의 다른 헌법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가장 긴 헌법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전 세계와 우리 자신의 주 정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4,000여 단어로 매우 짧습니다. 이에 비해 인도 국가의 헌법은 영어 버전으로 거의 120,000 단어이며 심지어이 도서관에서 가지고있는 가장 긴 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앨라배마 주 헌법 일 것입니다. 어떤 시계가 300,000 개가 넘는 단어. 물론이 표준에 의해, 미국 헌법의 창시자가 전체 정부 구조를 수립하는 데 수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희소합니다. 그리고 그 간결함, 나는 명확한 해석 해석이 있습니다. |
| With so few words there was no time for definitions clauses, or lengthy explanations of the key constitutional provisions. Instead our core constitutional guarantees, and our core structural provisions that structure government, are laid out in clear, but very sparse terms, which indeed I would invite subsequent generations to. Interpret and, and put substance in to those sparse phrases. This is something I'll talk more about in this segment. Not only is the US Constitution extremely short, it's also extremely difficult to change. It is among the World's Constitutions, the hardest to amend the text. The provisions for amendment are set forth in a very short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called Article V and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ey require extreme super majority approval by the US states. By super majority I mean far more than 50%. Indeed three quarters of the individual states. Need to consent in order for any amendment to be made to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What this means is the text is extremely difficult to change. The difficulty in amending the Constitution carries with it extreme interpretive implications. Because the text is so hard to change in order to update constitutional meaning. With a text that is largely set in stone. The interpreters of the Constitution led by the Supreme Court, occasionally must revise or update their understandings of constitutional meaning. This is something we see over time, over the generations at the Supreme Court, and it's a central part of out constitutional culture, that the text itself stays the same. While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at text changes over time. Relatedly the US constitution is the oldest continuously operating constitution in the world. As I alluded to before and will return to at the end of this segment. Written constitutionalism backed back a strong supreme court, is becoming the world's norm. But for most countries it's a phenomenon that has happened only in the past century. The US with a constitutional tradition stretching back over two centuries has a much longer proces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than other countries, which itself is a key feature of our constitutional culture and it affects interpretation even to the present day. All of these variables that I've been talking about. The writtenness of the Constitution, its extreme brevity, its age, the difficulty in changing the Constitution, combine with yet another feature about any kind of written language, which is the inherent ambiguity of language. And this is a short a Co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contains. Some phrases which are very vague and don't come with definitions clauses, and I'll show you some examples. Some parts of the Constitution are written in language that is crystal clear, even today. And generally, most readers of the English language would agree in what it means. Many other parts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some of the very most important Parts, are written in language that was extremely vague then and remains Extremely vague and compels subsequent interpretation. So for instance the Constitution contains a very clear requirement about the age of the President. It says, no person shall be eligible to be President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he age of 35 years. That's clear, it was clear when it was written. And it would be clear today where any controversy over that to occur. But consider another phrase also from article two which says, the executive Power should be vested in President. This is one of the most crucial foundations of the modern bureaucratic state. This power, the executive power, on which our entire administration is founded with almost a million employees virtually everything, everything we think of as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its authority rests on this clause. Yet the basic phrase here, the key operative phrase, executive power, is not defined anywhere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give meaning to that, what judges and other participants in constitutional debates have had to do over the past 200 years is contest, debate, and fill in their own interpretation of what executive power means. Likewise in the key provisions that protect our individual rights, some of the most important phrases are inherently vague and ambiguous. | 너무 적은 단어로 정의 조항이나 주요 헌법 조항에 대한 오랜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핵심적인 헌법 보장과 정부를 구성하는 우리의 핵심 구조 조항은 분명하지만 매우 희박한 용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후세에 초대 할 것입니다. 그 희소 한 문구를 해석하고 물질을 넣으십시오. 이것은이 부분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할 내용입니다. 미국 헌법이 극도로 짧을뿐 아니라 변경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세계 헌법에 속하며 본문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개정 조항은 제 5 조라는 헌법의 매우 짧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주정부가 극도의 과반수 승인을 필요로한다는 것입니다. 과반수로 나는 50 % 이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개별주의 3/4. 헌법의 본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동의해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텍스트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헌법 수정의 어려움은 극단적 인 해석 적 의미를 지니고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헌법상의 의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변경하기가 너무 어렵 기 때문입니다. 돌로 크게 설정된 텍스트.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헌법 해석가들은 때로는 헌법상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개정하거나 업데이트해야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볼 수있는 내용이며 헌법 문화의 핵심 부분이며 텍스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 텍스트에 대한 법적 해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이와 관련, 미국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 된 헌법이다. 내가 이전에 암시했던 것에 따라,이 구분의 끝에 돌아갈 것이다. 강력한 대법원을 배경으로 한 헌법 제정은 세계 표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한 세기에만 일어난 현상입니다. 2 세기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헌법 전통을 가진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제도 개발의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헌법 문화의 핵심 특징이며 오늘날까지도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변수는 제가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문서 작성, 극단적 인 간결성, 나이, 헌법 변경의 어려움은 언어의 본질적인 모호성 인 글쓰기 언어에 대한 또 다른 특징과 결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함 된 미국의 짧은 헌법입니다. 매우 모호하고 정의 절이없는 일부 구문은 몇 가지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헌법의 일부분은 오늘날까지도 명료 한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독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동의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헌법의 다른 많은 부분은 극도로 애매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매우 모호하여 이후의 해석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대통령의 나이에 관한 매우 분명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35 세가되지 않은 회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것이 분명해 졌을 때 그것이 쓰여졌을 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논란이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권력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야한다고 말하는 제 2 조의 다른 구절을 고려해보십시오. 이것은 현대 관료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직원이 거의 백만명에 달하는 우리 행정부가 설립 한이 권력은 모든 행정부가 연방 행정부로 생각하는 모든 사항을이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구절 인 집행력은 헌법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 년 동안 헌법 논쟁에서 판사와 다른 참가자가 한 일은 논쟁과 논쟁이며 집행력이 의미하는 바를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
| The eighth amendment prohibits excessive bail. What does excessive mean? It prohibits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What's cruel to one person may not be cruel to somebody else. These are clauses that come without definitions and without explicit user instructions, and this is important and this was intentional by James Madison and the other framers. They did not want a document that would be fixed in time with explicit. User code, instead, they envisioned a document where each generation would supply its own definitions for these grand, but yet inherently vagu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So, how has, how have subsequent interpreters given meaning to these clauses? And here I bring in a concept I mentioned a few minutes ago. Namely the notion of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American Constitutional traditional. We have in our constitutional order a predominant institution for, for giving meaning to the Constitution. it, we, it's called the US Supreme Court. And although it wasn't perhaps envisioned as such by the framers, very early on in America's constitutional development the Supreme Court became the leader institution that gave meaning to the vague phrases of the constitution. Historically I want to mention Chief Justice John Marshall. The first great chief justice of the US Supreme Court, who served for the better part of the early 19th century. Marshall and his colleagues on Supreme Court in this era where the ones who began giving the Supreme Court the prestige that it enjoys today as the leading interpreter of the Constitution in the US. And Marshall had a very specific vision for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He said in the leading early case of McCulloch versus Maryland. We must never forget it is a Constitution we are expounding. Now what does that mean? He was distinguish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rom the interpretation of many other sorts of legal documents. Ordinary consumer contract ordinary statutes and regulations, wills and trusts, the ordinary stuff. Of law that judges and other people deal with on a daily basis. The Constitution in Marshall's vision was something different, and it was something that was intended to endure for much longer. Recall what I said about the extreme brevi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act that it doesn't come with definitions clauses. For Marshall, as for many people who have followed him, what this means is that judge and other interpreters of The Constitution over time need to supply their own interpretive effort and interpretive analysis to these clauses. Moreover although The Constitutions text remains fixed it's interpretation does not. And here we see Marshall arguing that it would be unwise to provide immutable rules which would lock constitutional meaning in place. Instead Marshall and many who have followed him argue for more evolving constitutional culture. So given the necessity of subsequent interpretation in our constitutional tradition, who does the interpreting? Which institutions, which people? The central point is that interpretation is diffused, pluralistic, and multi-faceted in the US constitutional tradition. Yes, the Supreme Court has come to be the leading constitutional interpreter, but by no means is it the only key institution infusing the constitution with meaning. In the earliest days of the american republic, the supreme court was largely on the sidelines, instead, the most heated debates took place in the halls of congress, in the chambers of state legislatures, and in the public square itself, the public and the media of the 19th century being explicitly and intently involved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 8 번째 개정안은 과도한 보석금을 금한다. 과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잔인하고 평범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합니다. 한 사람에게 잔인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가없고 명시적인 사용자 지침이없는 조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며 James Madison과 다른 프레이머가 의도 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명시 적으로 시간에 맞춰 수정 될 문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용자 코드는 각 세대가 헌법에서 이러한 웅장하고도 근본적으로 모호한 조항에 대한 자체 정의를 제공하는 문서를 구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속 통역이이 조항들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몇 분 전에 언급 한 개념이 있습니다. 즉 미국 헌법 전통에서 제도와 제도 발전의 개념. 우리는 헌법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헌법 질서에있어 주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는 미국 대법원이라고합니다. 비록 미국의 헌법 개발 초기에 프레이머들에 의해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헌법의 모호한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도자 기관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는 대법원장 인 존 마샬을 언급하고자한다. 19 세기 초 더 나은 부분을 위해 봉사 한 미국 대법원의 첫 대법원장. 마샬과 그의 동료들은 오늘날 대법원에 미국 헌법 해석가로서의 명성을 얻으려고 시작한이 시대의 대법원에 재직 중이다. 그리고 마샬은 헌법을 해석 할 수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있었습니다. McCulloch 대 Maryland의 초기 사례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헌법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여러 다른 종류의 법률 문서의 해석과 헌법상의 해석을 구별하고있었습니다. 일반 소비자 계약 일반 법령 및 규정, 유언장 및 신탁, 일반 물건. 재판관과 다른 사람들이 매일 처리하는 법. 마샬의 비전에 대한 헌법은 다른 것이었고 훨씬 더 오래 견디기위한 의도였습니다. 헌법의 극단적 인 간결성에 대해 내가 말한 것을 상기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의 절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사실. 마샬에게있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헌법의 판사와 다른 해석가들이 시간을두고 자신들의 해석 적 노력과 해석 적 분석을이 조항들에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 본문이 여전히 고정되어 있지만 해석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샬이 헌법상의 의미를 잠그는 불변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마샬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하는 헌법 문화를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전통에서 후속 해석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누가 해석합니까? 어떤 기관, 사람들? 중심은 미국 헌법 전통에서 해석이 확산되고, 다원적이며, 다면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해석의 선두 주자가되었지만 헌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미국 연방 공화국 초창기에는 대법원이 주로 편에 서서 대신 가장 열띤 논쟁이 의회 홀, 주 입법부의 방 및 공공 광장 자체, 대중 및 19 세기의 미디어는 헌법 적 해석에 명시 적으로 열중하고있다. |
|  So to today, although the US supreme court has ascended to a predominant place in America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y no means is it the exclusive interpreter. And on some issues, it is not the most important interpreter of constitutional meaning. What has happened over the past 200 years through the rise of what we call strong form judicial review, is that the court has attained a pre, predominance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o agree, to a degree that the framers probably didn't foresee. And this started to happen early on and indeed John Marshall, once again, was a key architect of this strategy. In a famous case in 1803 called Marbury versus Madison Marshall for the first time asserted the proposition that it was the Supreme Court. Who was tasked with giving meaning to the Constitution. Marshall said it is,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the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 I've spoken about the institutions that give the Constitution meaning to return to one last point that I alluded to minutes ago. Let me speak about the role of two centuries of time and historical development in creating the constitutional culture we have today. Here I would focus on three separate Supreme Court cases, separated by almost two centuries. The first of these was the case of Worcester versus Georgia. This case, arising in 1832. Involved a review of the state of Georgia's forced expulsion of the Cherokee Indian tribe. Georgia had enacted policies in taking steps to oust most Cherokees from the borders of their state. And this was in violation the Supreme Court held of various laws and treaties of the United States. Georgia was acting unlawfully in doing this [FOREIGN] the Cherokees. What happened in the aftermath of that decision was telling about the weakness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prior century. As history tells us President Andrew Jackson allegedly said, John Marshall has made his decision, now let him go enforce it. And, of course the justices of the court had no means of enforcing this. And what happened is the sad story that the Cherokee tribe was indeed ousted from Georgia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won a legal victory in the Supreme Court. It was an empty victory because the other institutions in American life, which would have had power to enforce that decision against Georgia stood on the sidelines and let Georgia unlawfully oust the tribe from its borders. Very different story with the passage of a hundred years later. And another contested decision also involving another southern state. Cooper versus Aaron involved efforts to integrate the little rock Arkansas schools. Just a few years after the landmark Brown versus Board of Education decision in 1954. The law of the land as articulated by Brown and subsequent supreme court cases was that, deseg, er, segregated schools were illegal. And that the African American students who wished to attend high school in Little Rock, had an airtight constitutional right to do so. But again, the opinions that the supreme court issues are merely words on a piece of paper. As we saw in the Cherokee Indian case with Georgia without enforcement from other parts of society, those words would be idle victories indeed. What happened in Cooper ver, after Cooper versus Aaron though, tellingly, was President Dwight Eisenhower mobilized the 101st Airborne, sent troops down, sent federal troops down to Little Rock. Who stood guard over the Little Rock High School and ensured that the African American students who had won their legal victory had that translated into the actual victory of being able to attend school in Little Rock. So the Supreme Court's legal ruling was accompanied by immediate acceptance and enforcement by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And we saw this even much more recently in the hotly contested Bush versus Gore decision involving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Both sides claimed victory in the election. Both sides claimed to have the law on their side. But the minute that Vice President Al Gore had been declared to have lost the election by the Supreme Court in a very controversial decision within a day of that decision, Vice President Gore was on TV conceding the election and, and allowing a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to President George W Bush. Something that would not happen in certain other countries even today and would not have probably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iest days of the Republic. The point being we've had the text for over 200 years of our constitution. We've had the Supreme Court for over 200 years, but this nuanced and sophisticated acceptance of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enforcements of its decisions in our constitutional culture is something that it took quite a bit longer to attain. And this is a lesson and an instructive one I think for those who say that US constitutionalism is being exported around the world to other countries. It is true that that is being done, but to truly export, the US constitutional structure. We need to do much more than export the text. Instead, we need to export the text and the institutions, and in some cases, perhaps wait for the passage of time in other nations that don't have a constitutional tradition in order to have the kind of framework that we have here. | 오늘날 미국 대법원은 미국의 헌법 해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코 독점적 통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에서는 헌법 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해석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력한 형식의 사법 검토라고 부르는 것의 등장으로 지난 200 년 동안 일어난 일은, 법원이 헌법 해석에있어 선입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정도까지 동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이 시작되었고 실제로 John Marshall은이 전략의 핵심 건축가였습니다. 1803 년 유명한 사건으로 마버리 대 매디슨 마셜이 처음으로 대법원임을 주장했다. 헌법에 의미를 부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마샬 대변인은 법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지방과 사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저는 헌법이 몇 분 전에 언급 한 하나의 마지막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기관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헌법 문화를 창조하는데 2 세기의 시간과 역사적 발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2 세기에 걸쳐 분리 된 3 개의 대법원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들 중 첫 번째는 우스터 대 조지아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1832 년에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주의 체로키 인디언 부족 퇴학 당국에 대한 검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대부분의 체로키 족을 국경에서 몰아내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다양한 법률과 조약에 대해 대법원이 위반 한 바입니다. 조지아는이 일을 할 때 불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외계인] 체로키. 그 결정의 여파로 일어난 일은 지난 세기 동안 대법원의 약점에 관해 말하고 있었다. 앤드류 잭슨 (Andrew Jackson) 대통령이 역사가 말한 것처럼, 존 마샬 (John Marshall)이 결정을 내렸고 이제는 그를 강요하게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사는이를 시행 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체로키 부족이 대법원에서 합법적 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지아에서 축출 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루지아에 대한 결정을 집행 할 권한을 가진 미국인의 다른 기관들이 조지아를 국경에서 불법적으로 몰아 내고 조지아를 방치하게 만들었 기 때문에 그것은 비어있는 승리였다. 100 년이 지난 지금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남부 주를 포함하는 다른 경쟁 결정. Cooper 대 Aaron은 작은 바위 Arkansas 학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했습니다. 1954 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지 불과 몇 년 후. 브라운과 그 이후의 대법원의 사례에 의해 분명히 밝혀진이 토지의 법은 분리 된 학교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리틀 록 (Little Rock)의 고등학교에 다녔 으면하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있는 밀폐 된 헌법 적 권리가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기 한 의견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단어 일뿐입니다. 우리가 조지아와 함께 체로키 인디언 사건에서 사회의 다른 부분의 집행없이 본 것처럼, 그 말은 실제로 유휴 승리가 될 것입니다. Cooper 대 Aaron 대변인이 Dwight Eisenhower 대통령이 101 번째 공수를 동원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연방군을 Little Rock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쿠퍼 판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리틀 록 고등학교를 지켜 봤으며 합법적 인 승리를 거둔 아프리카 계 미국인 학생들이 리틀 록에서 학교에 다닐 수있는 실제 승리로 이어 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정부 기관의 즉각적인 수락과 집행을 수반했다. 그리고 우리는 2000 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부시 대 고어 (Bush vs. 양측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그들의 편에서 법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앨 고어 (Al Gore) 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결정을 내린 날에 대단히 논란이있는 결정으로 선거에서 패한 것으로 선언 된 순간, 고어 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선거를 양보하고 권력의 평화적 전환을 허용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오늘날에도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공화국 초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요점은 200 년이 넘는 헌법에 대한 본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 년 넘게 대법원을 지 냈습니다. 그러나이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미묘하고 정교한 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문화에서 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달성하는데 꽤 오래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자 유익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헌법 구조를 진정으로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내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해야합니다. 대신 우리는 텍스트와 기관을 수출해야하며 어떤 경우에는 헌법의 전통이없는 다른 나라에서 시간의 흐름을 기다려야 우리가 여기있는 종류의 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

Part2

|  |  |
| --- | --- |
| Let me turn next to the next part of this segment. Which deals with the structural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How the government is set up and structured. When the framers met here in Philadelphia in 1787, they we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is part of constitutional ordering. Bear in mind, they had just split away from a government which they thought was terribly structured, giving far too much power to the whims of a given monarch. And in setting up the new American constitution, in light of the failures of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it was important for the framers to get it right and give the right kinds of power and the right amounts of power to different parts of government. Here we turn once again to the views of James Madison, and the most important of the framers who was a student of governmental structure and proper allocation of authority, and thought quite a great deal and wrote a great deal about the best way to structure government. And he acknowledged a basic challenge which I've alluded to before. First the framers sought to give the government enough power to control the governed, but then structure it in such a way as to use Madison's phrase, oblige it to control itself. For Madison the solution to this dilemma, sought in, actually, lay in the basic ambition of the men and, today, men and women who occupy spots in our government. Recognizing, then, as now, that the inherent ambition of people, who would seek places in government. Madison and the other framers sought to build a government where this ambition was a built in feature. And one that would perhaps solve the problem of too much ambition in one place. So as Madison said, ambition must be made to counteract ambition. The interest of man must be connected with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place. For Madison this meant that the best solution for structuring government was dividing power and creating incentives for one branch of government to counteract the other. We call this separation of powers or checks and balances. And the framers cared so much about this that they didn't just do it on one dimension. But they did it on two dimensions. And here what we mean is when we talk about separation of powers in the federal government we often use the phras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Splitting the government into three branches,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and giving each one of them certain powers and more importantly propose this theory of behavior that Madison advances giving each branch the incentives to counteract and be somewhat jealous of the other branch's power. But, the framers didn't just divide constitutional, our constitutional order that way, they also did it on, what we would call, a vertical dimension, namely, dividing power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various state governments. This is a principle we call federalism and it is very important even today, as certain things are certain important policy choices are situated with the states, even as many important policy objectives have come to be viewed as national government prerogatives. **And it's on these two dimensions,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stat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Where our greatest debates over governmental structure continue to reverberate in the Supreme Court and in the broader public policy debates. James Madison's fundamental insight that power was more safely reposed in government. When it was broken up into smaller chunks and given to different branches or even different governments as between the national and the state government is one that remains important today even as we debate the precise boundaries of those divisions. For the modern Supreme Court it has been important particularly in the last few decades. Justice Kennedy in a representative statement in a case called U.S. Term Limits versus Thornton called Federalism Our Nations's Own Discovery. And he talked about the framers splitting the atom of sovereignty as a genius idea. | 이 세그먼트의 다음 부분 옆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헌법의 구조 조항을 다룹니다.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체계화되어 있는지. 창업자들이 1787 년 필라델피아에서이 곳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주로 헌법 적 명령의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군주의 변덕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부여한다고 생각했던 정부로부터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 헌법을 수립 할 때 연합 제국의 실패에 비추어, 창업주가 권리를 얻고 정부의 다른 부분에 올바른 권력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의 견해와 정부 구조와 권한의 적절한 배정의 학생이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썼습니다 . 그리고 그는 제가 전에 언급 한 기본적인 도전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창업자들은 정부에 통치권을 행사할 수있는 충분한 권한을 주려고했지만, 매디슨의 구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구성하여 통제해야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매디슨에게있어이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실제로 남성과 오늘날 우리 정부의 반점을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기본 야망을 찾으려고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입장을 모색 할 사람의 내재적 야망을 인식하게된다. 매디슨 (Madison)과 다른 선구자들은이 야심이 특징 인 정부를 세우려고했다. 그리고 아마도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야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매디슨이 말했듯이, 야망에 반대하는 야망을 가져야한다. 사람의 관심은 그 장소의 헌법상의 권리와 연결되어야합니다. 매디슨에게 이것은 정부를 구조화하기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권력을 분할하고 한 정부 부처가 다른 정부 조직에 대항 할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이 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이 권력이나 견제와 균형을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레이머들은 이것에 대해 너무 신경을 써서 한 차원에서 그렇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2 차원에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연방 정부에서 권력 분립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종종 수평 적 분리 권력이라는 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매디슨이 각 지사에게 다른 지사의 권력에 대해 다소 불만을 품고 인센티브를주는 행동 이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성 요원은 헌법 적, 헌법 적 질서를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가 수직적 차원, 즉 각국 정부와 여러 주정부의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차원으로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방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이며 오늘날 중요한 정책의 목표가 국가 정부의 특권으로 여겨지더라도 특정 정책이 국가와 중요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 즉 연방 정부 내의 세력의 수평 분리와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세력 분리가 있습니다.** 정부 구조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대한 논쟁이 대법원과 광범위한 대중 정책 논쟁에서 계속 울리는 곳.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은 권력이 정부에서보다 안전하게 재배치되었다는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했다. 그것이 더 작은 덩어리로 분해되고 국가와 주정부 사이에 다른 지사 또는 다른 정부에 주어 졌을 때 우리는 그 부문의 정확한 경계를 논할 때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대 대법원의 경우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요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미국 기간 제한 대 손튼 (Thornton)이라고 불리는 대표 성명서에서 연방주의를 우리 국가의 소유 발견이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권의 원자를 천재적인 생각으로 나누는 골자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
| Giving our citizens two political capacities, one state and one federal, each protected from incursion by the other. Now Justice Kennedy's statement may be a somewhat idealized version of our federal order. In reality, many, perhaps most public policy issues are, are shared between th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who cooperate or conflict or wrangle over the proper sphere of authority. But still, for many citizens and many judges, and many policy makers. This question of where we allocate authority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remains crucially important and as hotly debated today as it was over 200 years ago in Philadelphia. Now the way that the Supreme Court and others have operationalized these broad general principles about sep, separation of powers. I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pecific doctrines in particular cases. Recall what I said earlier that the basic framework parts of the constitution don't come with definition clauses or users guides. It has been the task of subsequent generations over the past 200 years to give content to these broad general principles, like executive power, legislative power, judicial power, or the broad principles that there ought to be some separation between the state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way the Supreme Court has done so is, over the past 200 years, to very gradually, very incrementally craft different doctrines that go to both separation of powers on the horizontal level and the vertical level, the so called federalism doctrines. It's useful to divided this general concept of separation of powers into three basic areas of doctrine and analysis. **The first of two of which deal with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and the federal government**. The third deals with the, what we call the horizontal relationship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So first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Constitution over the past two centuries in ways to control the states and limit state behavior, or even misbehavior. Second, and increasingly in recent decades,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Federalism doctrines to restrain the Federal Government as against the States, to say that there are some sphere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can't legislate, no matter how powerful it may claim to be. And finally, there's another set of doctrines that are continuously under development and debate that attempt to create limits between the different branch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occasionally the Supreme Court will address cases that asks the question, is the president exercising too much power. Has Congress overstepped its bound in, in this case? I'll speak to all of these doctrines in the next few minutes. But I want to highlight yet another debate in this area, which is the question of who should decide these major separation of powers questions. To be sure, the Supreme Court has asserted that it has the right to decide these fundamental questions of governmental structure just as it does other questions of law and other questions of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But there is a long scholarly tradition rooted in constitutional history that suggest that these basic structural choices about the constitution ought to be what we call non justiciable. In other words, decided outside the courts by the major political branches of American government. After all, remember James Madison's phrase ambition must be made to counteract ambition. For Madison at least, the government is already properly structured, so that if the President overreaches, Congress ought to step in and reign in Presidential power. Conversely, if Congress is exceeding its authority, perhaps the President will refuse to enforce that statute. | 우리 시민들에게 두 정치적 역량을 부여합니다. 하나의 주 및 연방 정부가 각각 다른 정부에 의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제 케네디 대법관의 진술은 우리 연방법의 다소 이상화 된 버전 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 정책 문제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에서 공유되며 적절한 권위의 영역에서 협력하거나 갈등하거나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과 많은 심사 위원,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헌법 제도에서 권위를 어디에 할당 할 것인가에 대한이 질문은 필라델피아에서 200 년이 넘는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논쟁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과 다른 사람들이 sep, 권력 분립에 관한 이러한 광범위한 일반 원칙을 시행 한 방식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정한 교리의 발전을 통해서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했던 것을 상기 시키십시오. 헌법의 기본 프레임 워크 부분에는 정의 절이나 사용자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권, 입법권, 사법 권력 또는 주정부와 정부 간의 분리가 있어야한다는 광범위한 원칙과 같은 광범위한 일반 원칙에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지난 200 년 동안의 후속 세대의 임무였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한 방식은 지난 200 년 동안 수평 적 수준과 수직적 수준에서 권력 분리라는 두 가지 교리를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소위 연방 주의적 교리입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교리와 분석의 세 가지 기본 영역으로 나누면 유용합니다. **두 개 중 첫 번째는 주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연방 정부에서 수평 적 관계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난 2 세기 동안 주 (state)를 통제하고 국가 행동이나 심지어는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적용했습니다. 둘째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연방 정부를 법제화 할 수없는 분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정부를 제재하기 위해 연방 주의적 교리를 적용 해왔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의 다른 부서들 사이에 한계를 창출하려는 시도와 토론을 계속하고있는 또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하는 경우를 다루게됩니다. 의회가이 경계를 넘어 섰습니까? 앞으로 몇 분 안에이 모든 교리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이 영역에서 또 다른 논쟁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이 중요한 권력 분리 문제를 누가 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확실히 대법원은 법률 및 개인 권리 보호에 대한 다른 질문을하는 것처럼 정부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 역사에 뿌리를 둔 오랜 학술적 전통은 헌법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 구조 선택이 우리가 비판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미국 정부의 주요 정치 지국에서 법원 밖에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제임스 매디슨의 야망을 포기해야 야망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디슨에게 적어도 정부는 이미 적절하게 구조화되어있어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의회는 대통령 권력에 발을 들여 놓아야한다. 반대로, 의회가 그 권한을 초과하면, 대통령은 그 법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절 할 것입니다. |
| And there's a real question about whether the Supreme Court needs to referee all these disputes. On the other hand, developments that Madison and his colleagues never could have foreseen have complicated the separations of powers mix on all of these dimensions, and perhaps given rise for stronger arguments for judicial supervision. For instance, the framers for all of their wisdom, never anticipated modern political parties and the modern two party state. And the implications that the two, two party system would have for separation of powers. When the same party controls both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the assumption that ambition will counteract ambition, and Congress will reign in the President, falls apart in a world of strong party discipline. Likewise, the framers never foresaw the dramatic rise and the size and scope of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that has taken place over the past century. In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the federal government had only a few thousand, non-military employees. Today the federal government has over a million such employees. Growth of the federal government over that phase has, some would argue fundamentally tipped the power of the presidency relative to the other branches. These are questions that are still debated, and that I'll return to in a few minutes. Now let me go somewhat more systematically through these different areas of doctrine. The first area where federalism doctrines have been applied by the supreme court and are b, baked into the constitution deal with controlling state behavior or even state misbehavior. Indeed, were we to travel back in time to 1787 and asked the framers what they worried most about. They would not have worried about an overreaching federal government. After all, recall how weak the federal government was under the Articles of the Confederation. What they worried about, and the reason they came back to Philadelphia in 1789, was that states were behaving badly. States were printing their own money to let their own debtors off the hook. They were couldn't agree on state boundaries. They couldn't agree on foreign policy, or policy toward the Native American trive, tribes. Each state was going in its own direction. States were enacting internal tariffs and trade barriers, of the sort that today we see between nation states. But this used to happen between Pennsylvania and New Jersey. The Framers regarded this as no way to run a proper country. And so one of the first things the constitution did was prohibit and provide doctrinal grounds for courts to prohibit states from engaging in this kind of individualistic behavior. A later justice, an important justice from mid 20th century Justice Robert Jackson said that these clauses taken together were to declare something he called a Federal Free Trade Zone. So if you imagine efforts such as our undergoing these days in Europe to create a, to, to trans, transform what used to be individual markets into a national free trade zone, that was a major impulse of the early days of the Constitution, and largely successfully enforced by the Supreme Court over the last two centuries. Such that these debates occur, but occur much more, much less frequently than they would have in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Modern debates over the scope of federal government authority often grapple with the fundamental tension and inconsistency that's built into the Constitution. On the one hand the baseline rule in the Constitution is that power resides with the states and the people, and the national government only has those powers that the document. | 그리고 대법원이 이러한 모든 분쟁을 심판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질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매디슨과 그의 동료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발전은 이러한 모든 차원에서 권력 분립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법 감독에 대한 더 강력한 주장을 제기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모든 지혜에 대한 프레이머는 결코 현대의 정당과 현대의 양당 국가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당제가 권력 분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시. 같은 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통제하면 야망이 야망을 저지하고 의회가 대통령을 통치한다는 가정이 강력한 당 징계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다. 마찬가지로, 프레이머들은 지난 세기 동안 일어난 연방 집행부의 극적인 상승과 규모와 범위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공화국 초창기 연방 정부는 수천명의 비 군사 직원 만 보유했습니다. 오늘날 연방 정부는 1 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방 정부의 성장은 다른 지부에 비해 대통령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주장 할 것이다. 이것들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있는 질문이며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교리의 다른 영역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가도록하겠습니다. 연방 주의적 교리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적용되고 연방 정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심지어는 잘못 행동한다고 ​​헌법을 다룬 첫 번째 영역. 실제로, 1787 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프레이머들에게 그들이 가장 걱정하고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연방 정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연방 정부가 연방법에 얼마나 약한 지 기억해보십시오. 그들이 1789 년에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 그들이 걱정 한 것은 국가가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채무자를 해고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인쇄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 경계에 동의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외교 정책,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부족에 대한 정책에 동의 할 수 없었다. 각 주마다 그 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국가들은 내부 관세와 무역 장벽을 제정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국가 간을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펜실베이니아와 뉴저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Framers는 적절한 국가를 운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헌법이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는 주정부가 이런 종류의 개인주의 행동을하지 못하게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리 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법무부의 로버트 잭슨 (Robert Jackson) 대법원장은 이후의 공판으로 인해 연방의 자유 무역 지대라고 불리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럽에서 요즘 우리가 겪고있는 것처럼, 개개인 시장을 국가 자유 무역 지대로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초창기의 주요한 충동이었습니다. 지난 2 세기 동안 대법원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한 논쟁들이 일어나기는하지만, 훨씬 더 자주 발생하며, 공화국 초창기에 비해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연방 정부 권한의 범위에 관한 현대의 논쟁은 헌법에 기본으로 포함되어있는 근본적인 긴장과 불일치로 인해 종종 고생합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 규칙은 권력이 주와 국민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며 정부는 오직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다. |
| And interpretations of the document affirmatively give to the national government. This is called the doctrine of enumerated powers. And it is often invoked by people who say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over-reaching its authority, because it can't point to a certain enumerated power.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enumerated powers themselves are extremely broad and extremely vague.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the Commerce Clause which gives the national government the authority to regulate commerce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today the Commerce Clause stands as the foundation of much national government authority. Now the meaning of this clause typically is not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nd has been contested heatedly over the past two centuries, indeed over the past few decades, in the context of major statutory enactments like the Affordable Care Act. It's possible to think about the Congress clause and the history of its development in four main historical epochs, and I'll summarize these briefly here. First, for much of the first hundred years of the constitution's life, until about the 1870s or 1880s Commerce Clause cases were few and far between, precisely because the National Government didn't do that much. In a series of decisions, in this period, that might surprise modern observers. The Supreme Court took a very narrow and formalistic definition of the Commerce Clause, and, issued decisions saying things like manufacturing in a major sugar plant was not commerce and therefore that company was not subject to basic anti trust laws. Or even more strikingly a factory that employed chird, child workers was not engaged in commerce. Therefore the National government had no basic, no authority to issue basic child labor legislation. This was a constitutional regime, which seems anachronistic to us, and indeed it proved unsustainable, even in a much earlier date, namely in the New Deal in the 1930s and the 1940s. After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some of President Franklin Roosevelt's most popular and important recovery initiatives President Roosevelt capitalizing on public dissatisfaction with a court that seemed to be stuck in the past proposed what would have been a radical solution, namely adding more justices to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reverse those rulings. Perhaps sensing the public outcry against its decisions and wanting to avoid the constitutionally problematic strong arming from President Roosevelt, the Supreme Court, by the middle of the New Deal reversed its prior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e clause and adopted something much more familiar to the doctrine we have today from the court. Namely, that commerce is defined pretty broadly to include any activity that affects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small, so long as if taken in its totality in an aggregate sense it has an economic impact. So this is the law today and indeed the law from, from about The New Deal Era, up until the time I was in law school in the mid 1990s. Was that congress could do pretty much what ever it wanted under the commerce close. There wasn't any real enforcement of federalism limitations in this area. We are now in a different era, with a more aggressive, robust Supreme Court, where at least five justices on the current Court maintain that there are limits to national government power and that the Court aught to enforce those limits. And we saw such a case just two years ago with the major Affordable Care Act case of 2012, where a slim majority of the Court felt that a key part of that statute, the individual mandate, was beyond the Federal Government's authority on commerce clause grounds. Because it sought to legislate in the Court's view. People who weren't doing anything but sitting around. And indeed the entire validity of the Affordable Care Act was only upheld on a different ground the so-called taxing power. Because the the burden or the penalty that falls on people who didn't pay the individual mandate is operational as through their tax returns. So we're in an era now where federal government authority is vast but the Supreme Court assertively maintains its prerogative to enforce that. There are many scholars and many in the policy world who feel that these kind of federalism restrictions to control federal government overreaching are important but ought not be enforced by the Supreme Court. Indeed keep in mind the structural provisions that are built into the so-called political branches, that are built into Congress itself. and, and the argument goes includes plenty of protections for the states. Each state gets two votes in the Senate. No matter how big or how small. | 이 문서에 대한 해석은 정부에 긍정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열거 된 권력의 교리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연방 정부가 특정 권력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권위에 과도하게 도달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종종 제기됩니다. 반면에 열거 된 힘의 일부는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모호합니다.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주들 사이에서 상거래를 규제 할 권한을 중앙 정부에 부여하는 상거래 조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무 조항은 많은 국가 정부 권한의 토대로 서 있습니다. 이제이 절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지난 2 년간 수십 년간 열세를 맞이하여 저렴한주의 법과 같은 주요 법령의 맥락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의회 조항과 그 역사에 대해 네 가지 주요 시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의 첫 100 년간의 많은 부분에 대해, 1870 년대 또는 1880 년대 상거래 조항의 사례가 거의 없었던 때까지, 정부가 그렇게 많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시기에 일련의 결정을 내리면 현대 관측통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거래 조항을 매우 좁고 공식적으로 정의했으며 주요 설탕 공장에서의 제조와 같은 것들은 상거래가 아니며 따라서 회사는 기본적인 반독점 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더 획기적으로 chird를 고용 한 공장, 어린이 근로자는 상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부는 기본적인 아동 노동 법안을 발급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대 착오적 인 것처럼 보이는 헌법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1930 년대와 1940 년대의 뉴딜 (New Deal)에서 훨씬 더 이른시기에도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프랭클린 루즈 벨트 대통령의 가장 인기 있고 중요한 회복 계획을 부결시킨 후 루즈 벨트 대통령은 과거에 고착 된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여 급진적 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즉 대법원에 대법원을 추가했다. 그 판결을 뒤집을 법원. 아마도 대법원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헌법 상 문제가되는 강력한 무장을 뉴딜 정책에 의해 회피하려는 바람에 대중의 부름을 받아 들일 수 있었을 지 모르겠다. 우리는 오늘 법정에서 왔습니다. 즉, 상거래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주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도록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집합 적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취해지면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은 1990 년대 중반에 법대에있을 때까지 뉴딜 시대에 관한 오늘날의 법입니다. 그 의회는 상거래가 끝나기를 원했던 일을 거의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분야에서는 연방 주의적 한계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강력하고 강력한 대법원을 통해 다른 시대에 처해있다. 현재 대법원은 적어도 5 명의 대법원장이 국가 권력에 한계가 있으며 법원은 그러한 제한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2 년 전만해도이 사건을 2012 년 주요한 저렴한 케어 법 (Affordable Care Act)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대다수가 그 법령의 핵심 부분 인 개인 위임장이 연방 정부의 권위 조항 근거 . 법원의 입장에서 입법을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저렴한 의료법의 전체 유효성은 소위 세제 권력 (taxing power)이라는 다른 근거에서만지지되었다. 개인 위임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이나 형벌은 세금 환급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방 정부 권한이 광대 한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이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연방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통제하기위한 이런 종류의 연방 주의적 제한이 중요하지만 대법원에 의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정책 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 자체에 내장 된 이른바 정치적 지부에 건설 된 구조적 조항을 명심하십시오. 그 논쟁에는 국가에 대한 많은 보호가 포함됩니다. 각주는 상원에서 두 표를 얻습니다. 아무리 크거나 작을지라도. |
| So that a state like Wyoming has as much representation on a state-by-state basis as a state like California. Despite vast discrepancies in population. For many observers, this suggests that state interests are fully protected in the actual voting procedures and political process in Congress, and that the Supreme Court ought not get involved, in policing this boundary. It ought to stick to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and standing up for the rights of entities and individuals who don't have a voice in the political process, whereas states do have such a voice. But clearly, as a statement of current constitutional law, the Supreme Court has come out strongly in the other direction, saying that it can and will enforce these federalism restrictions. I'll now speak about a different element of separation of powers. Now, in here we're talking about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different branch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is is the area where both today and historically Supreme Court doctrine has been least helpful. I think precisely because the fundamental definitions of these different branches are so unspecified.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judicial power are undefin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ecise contours and, and boundaries of those concepts have become evermore muddled as the government has grown, and changed, and become more complicated. For instance, take an agency like the Food and Drug Agency, which regulates the safety of food and therapeutic products,. The FDA is an executive branch agency. We know it is within the executive branch but if we look at its functions it does some things that look like executive enforcing of the laws. It had the authority to inspect and enforce rules, say, against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But some of what it does looks a lot more like a legislature. Like many agencies, the FDA has authority to write rules which are binding and generally applicable and look a lot like statutes. We call them regulations and thus place them in the executive branch, but functionally, that behavior looks much more legislative. Other agencies have the ability to adjudicate actual cases and disputes. For instance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as its own judges who hear debates, or hear disputes when somebody claims to be denied the proper amount of benefits exercising very much a judicial function again despite technically being in the executive branch. For this reason, the growth of government in ways that the framers never could have intended have put pressure on these basic dep, definitions inherent in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and confounded easy judicial techniques for drawing bright lines between such branches. Today in this area courts are struggling with issues like national security surveillance by the executive branch the power of the President to wage war in foreign countries despite not formally declaring war and the growth of congressional behavior and congressional oversight activities which raise questions about congressional overreaching. In these areas, there's a real question of how much the Supreme Court, or any judges can do, to meaningfully police these boundaries. As I've said, the fundamental definitions in the Constitution are so vague and unspecified, betwee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 That, articulating meaningful doctrinal standards to channel and cabin these different types of power have proven over the past two centuries to be largely unworkable. | 따라서 와이오밍 주 같은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주 단위로 많은 표현을합니다. 인구의 광대 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는 의회의 실제 투표 절차와 정치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으며 대법원은이 경계를 치안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적 과정에서 목소리가없는 개인이나 개인의 권리를지지하는 반면, 국가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에 대한 진술로서 대법원은 이러한 연방 주의적 제한을 시행 할 수 있고 또 시행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강력하게 나왔다. 저는 이제 권력 분립의 다른 요소에 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앙 정부의 여러 부서들 사이의 권력 세력 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역사적으로 대법원의 교리가 가장 도움이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나는이 다른 가지의 근본적인 정의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헌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더 복잡 해짐에 따라 이러한 개념의 정확한 윤곽과 경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안전청 (Food and Drug Agency)과 같은 대행사를 선택하면 식품 및 치료 제품의 안전을 규제합니다. FDA는 집행 기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행정부 내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기능을 살펴보면 법 집행과 같은 몇 가지 일을합니다. 제약 회사에 대해 규칙을 검사하고 집행 할 권한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하는 일 중 일부는 입법부와 훨씬 비슷해 보입니다. 많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FDA는 구속력 있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작성하고 법령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권한을가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규제라고 부르며 행정부에 배치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그 행동이 훨씬 입법화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기관은 실제 사건과 분쟁을 판결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논쟁을 듣는 독자적인 판사가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행정부에 기술적으로 있어도 사법 기능을 다시 행사하는 적절한 수당을 거부 당하면 분쟁을 듣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레이머가 결코 의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정부의 성장은 이러한 기본 파급에 대한 압력을 가했다. 권력의 수평적인 분리에 내재 된 정의와 그러한 지점들 사이의 밝은 선을 그리기위한 쉬운 사법 기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늘날이 지역 법원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고 의회의 과도한 행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회 행동 및 국회 감독 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국가 안보 감시와 같은 사안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대법원이나 판사가이 경계를 의미있게 경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지를 묻는 진정한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헌법의 근본적인 정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간에 매우 모호하고 불특정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권력을 수습하고 캐빈하기 위해 의미있는 교리 적 기준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지난 2 세기 동안 크게 효과가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 Moreover many of these decisions, such as whether or not to send troops to a foreign country are probably the worse kind of decisions to vest in a group of unelected judges who take a long time to hear cases. And perhaps ought to be worked out more within the political process. Certainly James Madison and the other framers envisioned that Congress and the President would be their own best check on each other. That Congress would check the President when he or she overreaches, and that the President would jack or refuse to enforce or would veto congressional laws that represent where we are reaching. In here I will return to though a problem that the framers never foresaw but that is essential part of our political community today which is the rise of disciplined fairly powerful political parties. Although, the framers envisioned politics. They didn't in, view, vision political parties. And, the notion of a strong disciplined party controlling both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undermines many of the structural protections that Madison and the other framers thought would work to control over-reaching. Simply put, when the President and Congress are of the same party who will rein in an overreaching President if the President indeed is the leader of his, his party? And we've seen, seen examples. Whatever political party or persuasion one is, you can think of examples when Republican presidents have seemed to exert dramatic authority unchecked by Congress. And you can think of recent examples of a Democratic presidents have seem to exert unusually robust authority largely unchecked by Congress. This is something the framers never foresaw. And it's a fundamental feature of our political process which puts pressure. And perhaps stretches to the breaking point. Some of the basic allocations of authority in in the national government. These are problems for which the court probably doesn' have a solution and it's up to the rest of our constitutional culture and other institutions: the public, the president and congress. Perhaps working together going forward to better structure and allocate power. This is not an area where an easy doctrinal solution exists. So to sum up this entire separation of powers discussion, I think we see two very different problems, or two very different phenomenon. In the, in the Federalism context the debate between state and federal authority and in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context arrayed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When it comes to judicial control of national government authority vis-a-vis the states, the current Supreme Court has been very assertive, very robust and articulated very clear rules. In ways that many think have gone too far in asserting judicial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presidential authority and overreaching many feel that the court has not done enough to articulate clear meaningful standards to cabin executive power in the 21st century, as it grows in ways that the framers never would have imagined over two centuries ago. So these are the two competing challenges in this area, that the court. And the rest of our constitutional culture we'll need to address going forward. | 또한 외국에 군대를 파견할지 여부와 같은 이러한 결정 중 많은 부분이 사례를 듣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 판사의 비 선출 된 판사에게 부여하는 최악의 결정 일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 과정에서 더 많은 일을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제임스 매디슨과 다른 선구자들은 의회와 대통령이 서로 최선의 수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회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복역 할 때 대통령을 확인하고, 대통령은 우리가 도달하고있는 곳을 대표하는 의회 법률을 거부하거나 강요하거나 거부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프레이머가 결코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정치 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프레이머들은 정치를 구상했습니다. 그들은 정당에 비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통제하는 강력한 규율 당원의 개념은 매디슨과 다른 구상가들이 과도한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구조적 보호 장치를 훼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과 의회가 대통령이 실제로 자신과 그의 당의 지도자 일 경우, 과도한 대통령을 저지 할 동일한 당원이 될 때? 그리고 우리는 예를 보았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설득가가 있더라도 공화당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극적인 권위를 발휘 한 것처럼 보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민주당 대통령의 사례가 의회에 의해 거의 확인되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발휘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이머가 결코 예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력을 가하는 정치 과정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뻗어있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기본 할당 중 일부. 법원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문제가되는데, 이는 헌법 문화와 다른 기관들 (공공, 대통령, 총회)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더 나은 구조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교리적인 해결책이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이 권력 분리의 전체적인 분리를 요약하면 두 가지 다른 문제, 또는 두 가지의 매우 다른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방 주의적 맥락에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의 논쟁과 권력의 수평 적 분리에 대한 논쟁이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에 대한 정부 권한의 사법 통제에 관해서는, 현재 대법원은 매우 강력하고 명확하고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 보호를 주장하는 데 너무 멀었다 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한편, 대통령 권한과 오바 레이싱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법원이 21 세기에 행정 집권 세력에게 명확하고 의미있는 기준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프레이머가 결코 두 가지 이상을 상상할 수없는 방식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세기 전. 그래서 이것들은이 분야에서 두 가지 경쟁적인 도전들입니다. 나머지 헌법 문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언급 할 필요가 있습니다. |

Part3

|  |  |
| --- | --- |
| This next part addresses a part of the Constitution that many people think of first and foremost when they think about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the protections that it affords. And here I'm talking about individual rights. Rights such as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the right to be free of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the protections that one has as a criminal defendant. These are the rights which many people associate most predominantly with constitutionalism and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they are a part of the American constitutional order that was there almost from the beginning, but has developed in dramatic fashion over the past 50 or 60 years. The regime we have today for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looks dramatically different than it did 100 years ago, and certainly dramatically different than it did 200 years ago. This is a subject which can, and in, at many law schools does occupy an entire semester long course but here, rather than focus on specific individual rights, I want to draw together and emphasize some general themes that I think, situate the individual rights jurisprudence of the American Constitutional order within the longer textual and historical tradition that I've been talking about during this segment. And I can focus on a few major points along this line. First, as I've alluded to before,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vis a vis individual rights, just like it is in other sections is remarkably sparse and undefined and, the mere words on the page don't do the work in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that our constitutional culture has come to want them to do, and I'll offer some examples here. Second this is an area where we've seen dramatic changes over time in the national enforcement of individual rights guarantees. Our constitutional world is fundamentally different today that it was a century ago and changing even year by year, decade, decade by decade in some ways I'll discuss. Third, I want to address two fundamental general doctrinal innovations that the Supreme Court has operationalized over the past century in building the Constitution of individual rights that we have today. The first of these is the concept of incorporation, the idea that rights which as written in the document's text apply and constrain only the national government, have been made applicable and universalized within the American constitutional order to bind all government actors, national, state and local. Next, another general doctrinal device which is quite important is the concept of balancing, or a nuanced standard of review, that the justices apply in particular cases across a wide range of individual rights areas: race discrimination, sex discrimination,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And here, the basic notion is that no individual right is absolute. In the, in our constitutional discourse the claims of individual rights holders are and must be balanced against compelling claims by society at large for a different result. And this in, to a large, great extent, is the project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n the individual rights space. It is the specification of which rights are worthy of special protection that, there, then, that therefore, demand especially good or compelling reasons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affect those rights. And its this shifting denomination of which rights are important enough to, to demand particularly good reasons from the government that is a large part of what the judges have done in, in construing the Constitution over the past half century or more. Fourth, I'll briefly address what's evident when one consider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rights doctrin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somewhat permial, permeable boundaries between formal constitutional doctrine and public opinion about those rights. Simply put, as society decides that protecting a given interest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we would expect to see and we do see doctrinal shifts in the judicial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se rights. Nowhere is this more evident than in the dramatic change in the manner in which the courts protect rights for certain same-sex individuals, or even individuals to engage in same-sex relationships, and I'll speak for a few minutes about that. finally, as important as the Supreme Court has been and still is in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there are those who wonder, and, and a question that's worth posing is, is the court too powerful or too supreme in this area? A question to consider is whether our rights would be even more firmly grounded if we asked and expected legislatures, executive officials, police departments, and other institutional actors to take seriously these rights, instead of leaving them for judicial resolution. I'll address all of these briefly in turn. | 이 다음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헌법과 그것이주는 보호에 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헌법의 일부를 다룹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종에 근거한 차별이없는 권리,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보호와 같은 권리.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헌법주의와 헌법 보호와 가장 많이 관련되어있는 권리이며, 그들은 처음부터 거의 있었지만 지난 50 년 또는 60 년 동안 극적인 방식으로 발전한 미국 헌법 질서의 일부입니다.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가진 정권은 100 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고 200 년 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법안은 많은 법률 학교에서 학기 전체를 ​​연장 할 수있는 주제이지만 여기서 개별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주제를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를 놓으려고합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이야기해온 오래 전의 텍스트 및 역사적 전통 속에서 미국 헌법 질서의 법학. 그리고 나는이 라인을 따라 몇 가지 주요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전에 암시 한 바와 같이, 헌법의 본문은 다른 섹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매우 드물고 정의되지 않았으며, 페이지의 단순한 단어는 개인을 보호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헌법 문화가 그들에게하기를 원하는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권리 보장의 국가 집행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인 변화를 겪은 곳입니다. 우리의 헌법 세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1 세기 전과 10 년마다, 10 년마다, 10 년마다 몇 가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대법원이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지금 가지고있는 개인 권리의 헌법을 구축함에있어 운영해온 두 가지의 근본적인 교리 적 혁신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화의 개념이며, 문서의 본문에 명시된 권리가 국가 정부에만 적용되고 정부 만 제한한다는 생각이 미국의 헌법 조항에 적용되어 모든 정부 행위자, 국가, 주 및 국 노동 조합 지부.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일반 교리 적 장치는 인종 차별, 성 차별, 종교 자유의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개인 권리 영역에 걸쳐 사법부가 적용될 균형 조정의 개념 또는 검토의 미묘한 기준이다. .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은 절대적인 개인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 담론에서 개인 권리 보유자들의 주장은 다른 결과를 위해 사회 전체의 강력한 주장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권리 공간에서의 미국 헌법의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권리가 특별한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명세는 그러므로 정부가 특히 그러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좋은 또는 강력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이 권리의 이동 교단은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쳐 헌법을 해석 할 때 판사가 한 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로부터 특히 좋은 이유를 요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넷째,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인의 권리 교리의 발전, 공식적 교리와 그 권리에 대한 여론 사이의 다소 퍼니 얼러지고 투명한 경계를 고려할 때 명백한 것을 간단히 말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회가 주어진 관심을 보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볼 것이고, 우리는 사 법적 보호,이 권리에 대한 헌법 보호에서의 교리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특정 동성 개인, 또는 심지어 동성 간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의 극적인 변화에서보다 분명하게 알 수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여전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만큼 중요하고, 의문의 여지가있는 사람들이 있으며,이 영역에서 법원이 너무 강력하거나 너무 최고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경찰 부서 및 기타 제도적 행위자들에게 사법 결의안을 남기지 않고 이러한 권리를 진지하게 요구하고 기대한다면 우리의 권리가 더욱 확고하게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는이 모든 것을 간단히 다룰 것입니다. |
| First, let me turn to the concept of how inadequate text is sitting on the page alone and here I'm going to use two textual guarantees of rights. The first here,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or the right of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may be familiar to some of you if you've read the US Constitution. This comes right out of the First Amendment of our Constitution. Now the second clause here looks good, as well. Citizens are guaranteed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This seems to protect the same freedoms, indeed it was likely modeled, on the United States First Amendment as it came afterwards. The second clause I read, labeled as B on the slide, actually comes from the North Korea constitution, where we know that despite these paper protections, citizens dramatically do not have the same protections as they do elsewhere. And this is a vivid and perhaps almost too extreme example of the disconnect between mere words on a page and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protection of those rights. If the North Korea example seems extreme, I'll turn to a more accurate historical example from our own constitutional development. This text comes from our own Constitution, the 14th amendment, we call thi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No state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It today is on,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ersonal protections against government discrimination and it forms a core fabric of our Constitutional rights. This amendment was enacted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Civil War, in the late 1860s and so it has been on the books for almost 150 years as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land of the United States. Now, as our history shows, for the majority of this amendment's life, these words were as unenforced as the words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 showed you a few minutes ago. These words were on our books through a period in the early,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of brutal oppression and Jim Crow segregation in the South and, dramatic discrimination against African Americans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As these examples illustrate, words on the page by themselves, are inadequate protections of personal freedoms. What is needed is a more thick institutional culture of enforcement and acceptance, to operationalize those words. To illustrate this point further I'll use the words of Dr. Martin Luther King Jr., very early in his life actually as a high school student when he gave an award winning speech precisely on this issue of the empty promise of amendments on the pages of the Constitution without more effective enforcement. King said America gave its full pledge of freedom 75 years ago and backed it with amendments to the national constitution where there should no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or other criteria. But as King notes, Black America, in his, in, on this writing, Black America still wears chains. Thirteen million black sons and daughters of our forefathers continue to fight for the translation of the thirteenth, fourteenth, and fifteenth amendments from writing on the printed page to actuality. It's this notion of translation that has been a theme of this segment be it whe, whether it be in the separation of powers area or this individual rights area. The words on the page don't interpret themselves and they certainly don't enforce themselves. That requires an ongoing and evolving societal commitment. And this is what King both was writing about in the 1940s and then participated in transforming and translating the meaning of the fourteenth amendment into actual legislation and actual court decisions, through the remainder of his life. I'll now address two specific doctrinal areas where the Supreme Court has constructed interpretive techniques and doctrines to engage in this project of translation, that Dr. King spoke about. | 먼저, 부적절한 텍스트가 페이지에 얼마나 앉아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텍스트 권한을 사용하려고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의회는 언론의 자유 또는 보도를 축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모일 수있는 권리를 누리고 정부에 민원 처리를 청원하는 것은 당신이 미국 헌법을 읽었을 때 여러분 중 일부에게 익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 1 수정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절도 잘 보입니다. 시민들은 언론, 언론,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수정 헌법 제 1 조에서 동일한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에서 B로 표시된 두 번째 절은 실제로 북한의 헌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 헌법은 이러한 종이 보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른 곳에서와 똑같은 보호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의 단순한 단어와 그 권리의 제도적 및 문화적 보호 사이의 명확하지 않은 생생하고 어쩌면 극단적 인 예입니다. 북한의 사례가 극단적 인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우리 자신의 헌법 개발에서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례로 나아갈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의 헌법 제 14 개정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평등 보호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국가도 그 관할권 내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동등한 법의 보호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정부 차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인 보호 장치 중 하나이며 헌법상의 권리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개정안은 1860 년대 후반 남북 전쟁 직후에 제정되었으므로 약 150 년 동안 미국 토지의 헌법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가 보여 주듯이, 이번 수정안의 대부분의 삶에 대해,이 말씀은 제가 몇 분 전에 당신에게 보여준 북한 헌법의 말씀처럼 강요받지 못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19 세기 초반, 20 세기 초반의 잔인한 억압과 남부의 짐 크로우 분리와 전체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극적인 차별을 통해 우리 책에 실렸습니다. 이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페이지 자체의 단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단어를 조작하기 위해 시행 및 수용의 더 두꺼운 제도적 문화입니다. 이 점을 더 설명하기 위해 나는 Martin Luther King Jr. 박사의 말을 그의 인생의 아주 초기에 고등학생으로 고용 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집행없이 헌법의 페이지를 킹 장관은 75 년 전 미국이 자유를 전면적으로 약속했으며 인종이나 다른 기준에 따라 차별을하지 말아야하는 국가 헌법의 개정안을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킹 노트에 따르면, 블랙 아메리카 (Black America)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이 글을 쓰면서 블랙 아메리카는 여전히 사슬을 쓴다. 조상의 1300 만명의 흑인 아들과 딸들은 인쇄 된 페이지의 글에서 실제까지 13 번째, 14 번째 및 15 번째 개정안을 번역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 분리 권이든 개인 권익권 권 이건이 세그먼트의 주제였던 번역 개념입니다. 페이지의 단어는 스스로 해석하지 않으며 확실히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진화하는 사회적 공약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1940 년대에 킹 (King)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 14 차 수정안의 의미를 실제 법령과 실제 법원의 판결로 변형하고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법원이이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있는 해석 기술과 교리를 구축 한 두 가지 구체적인 교리 영역에 대해 말씀 드릴 것입니다. |
| Without going into specific areas like freedom of speech, or freedom of religion, or criminal protections for criminal defendants, I'm focusing on two general points that apply broadly across the landscape of individual rights in the American Constitutional context. The first of these is this idea of incorporation. Incorporation is what the Supreme Court did from the 1925, the 1920s through the 1960s in order to universalize many of the most important individual rights protections in our constitutional order. If you look at the Constitution's text, and here's an example of the first amendment it quite clearly says, Congress shall pass no law affecting freedom of speech, press, etc. now, if one reads this literally, one would think that only federal statutes must comply with First Amendment scrutiny, that, say, state laws or local police enforcement could transgress religious freedoms protection or throw people in jail for writing something in the media, and indeed, if one reads the text ab, absolutely literally, it applies only to the National Congress. But of course, that's not the way we've read it or understand it in our society and have not read it that way for almost a century. And this relates to the notion of incorporation. What the Supreme Court did start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was take cert-, certain basic guarantees, like the First Amendment, which, by its terms, appears to apply only to Congress and incorporate, or fold that into our concept of due process of law, which through the 14th Amendment, applies to all governments, state, local, and as well as national. And the Supreme Court did this for many, indeed most of the core individual rights protections that we hold dear that protect defendants in criminal trials, that protect freedom of religion, that protect our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And then the Supreme Court likewise universaliz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which by its terms is written only to govern states, and said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likewise has to abide by the core anti-discrimination principles o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So what the Court did through its process of incorporation that took place over the better part of the half of the 20th century was to universalize and operationalize the core individual rights guarantees in the constitution which again, by the text alone, would have seemed to apply only to certain governments and not others. Today, the individual protections that are most important to Americans apply as against all levels of government, national, state, or local. And the core, the basic core of individual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pplies equally across the nation and, and doesn't vary, at least in terms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from state to state. So this was a key judicial move that was unforeseen by the framers, but that has done, a great deal to operationalize the culture of individual rights that we have today. The other core judicial innovation that I want to emphasize in that it spans a wide swath of individual rights doctrines is the way in which the court, particularly in the late 20th century through today, has articulated different levels of scrutiny and different levels of balancing individual rights against other interests. One of things, one of the things that's clear when one thinks about individual rights is that no matter how important a given individual right is that right becomes problematic when it is applied in an absolute sense to an extreme at the expense of all other rights or all other public values. We live in a complex world where often there are difficult and fundamental trade-offs between, for instance the widely held desire for privacy in our personal communications and the equally widely held desire for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gainst threats that demand a certain tradeoff. We value freedom of religion deeply, but we also realize that there are certain commitments and behaviors that we need to regulate universally in society and not allow religious exemption. |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형사 피의자에 대한 형사상의 보호와 같은 특정 분야에 가지 않고, 나는 미국 헌법의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들 중 첫 번째는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설립은 1925 년 대법원이 192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개인 권리 보호를 보편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헌법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정안의 예가 있습니다. 의회는 언론, 언론 등의 자유에 영향을주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읽는다면 연방법 만이 주 법이나 지방 경찰 집행 기관이 종교 자유 보호를 침해하거나 언론에 무언가를 쓰기 위해 감옥에 투옥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 개정안에 부합해야하며 실제로 문자 그대로 ab를 읽으면 문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회에. 물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읽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며 거의 1 세기 동안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립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20 세기 초반에 시작한 것은 헌법 수정 조항 1 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적법 절차에 대한 개념을 포함 시키거나 축소시킬 수있는 보증과 같은 기본적인 보증을 취하는 것이 었습니다 제 14 차 개정을 통해 모든 정부, 주, 지방 및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대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많은 개인 진정한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해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평등 보호 조항을 보급했다. 평등 보호 조항은 그 조항에 따라 주정부에만 작성된 것으로서,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로 동등 보호 조항의 핵심 차별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원이 20 세기 중반의 더 좋은 부분에 걸쳐 이루어진 법인 설립 과정을 통해 헌법에서 핵심 개별 권리 보장을 보편화하고 운영하는 것은 텍스트만으로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만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 보호는 모든 수준의 정부, 국가, 주 또는 지방에 적용됩니다. 헌법에 보장 된 개인 권리의 핵심 핵심은 국가 전체에 걸쳐 동등하게 적용되며 적어도 국가 헌법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레이머가 예기하지 못했던 주요 사법 절차 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있는 개인 권리 문화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개별 권리 교리의 폭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다른 핵심 사법 혁신은 법원, 특히 20 세기 후반의 오늘날의 법원이 서로 다른 수준의 조사와 개별적인 수준의 균형을 조율 한 방식입니다 다른 이해 관계에 대한 권리. 하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생각할 때 명확한 것 중 하나는 주어진 개인의 권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모든 다른 권리를 희생하여 극단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로 적용될 때 문제가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공개 가치. 우리는 개인 통신에서 널리 퍼져있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욕구와 특정 균형을 요구하는 위협에 대한 국가 안보 및 방어에 대한 동등하게 널리 보급 된 욕구와 같이 종종 어렵고 근본적인 절충점이있는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깊이 존중하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규제하고 종교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어떤 약속과 행동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
| This fundamental tension is generates much of the debates in, about individual rights in our in our legal culture. And in response justices on the Supreme Court over the past half century or more have articulated a set of doctrines which apply broadly across individual rights that attempt to balance these different competing considerations. And we think of these as levels of scrutiny. The basic principle is that most of the things government wants to do, it can justify against lawsuits if it can articulate a merely rational basis. Essentially, as long as it can give any decent reason it can justify a distinction it makes. So for instance the government in its tax code draws lots of distinctions between how certain things are taxed or different levels of tax that some people pay as opposed to another. Clearly it creates inequality. But that inequality is not, according to judges and others who participate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not the kind of equality that we ought to care deeply about, and to say we care deeply about in a doctrinal sense, is to say we give certain problematic dimensions of inequality, we give them strict scrutiny. What strict scrutiny means is, and an example would be, when the government treats people of different races differently, we are going to apply the strictest possible scrutiny, given the problematic history of racial differentiation. It doesn't mean the government can never differentiate on race, it just means that the government better have an especially good, or compelling, reason for doing so. This debate became overt and becomes overt whenever the Supreme Court takes a case about affirmative action in education, as it did mo, most substantively over a decade ago in the Grutter versus University of Michigan case. And in that case the court upheld the,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s use of race in law school admissions, but only because the law school made a compelling case that governmental consideration of race in admissions was necessary to build the kind of law school class to, that produced the optimal learning environments and that produced the kind of graduates that employers and, and other elements of society wanted. But, the only way that race, could be considered in that case, was due a particularly compelling justification, given by the university. This kind of tradeoff, this kind of balancing, applies broadly, across a number of different individual rights doctrine, and it's something that's been constructed by the judges over time, in order to mediate this difficult balance that I've been talking about. Not only does the balance mediated between these competing considerations, but the way we weigh different interests, the way we kind of do this judicial balancing, quite clearly changes over time, in response to changes in public attitudes. This judicial balancing, this use of the tools of different levels of scrutiny has been with us so, for some time. But equally clearly, the way judges strike the balance, the particular weights they put in the scale in particular cases also change over time as some interests gain in importance. Others wane in importance and this gives a certain dynamism to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here some interests which even in very recent memory were disregarded suddenly become more important. Thurgood Marshall who himself as a attorney arguing before the Supreme Court in the 1940s and 50s helped shape our changing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race discrimination, then gave voice to this when he himself was a justice on the Supreme Court. | 이 근본적인 긴장은 우리의 합법적 인 문화에서의 개인 권리에 관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 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대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응답으로이 서로 다른 경쟁적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련의 교리를 분명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면밀한 조사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은 정부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단지 합리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소송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괜찮은 이유를 줄 수있는 한, 그것이 구별을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세금 코드를 통해 특정 물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과 세금이 다른 방식으로 구분되는 방식을 구분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평등을 만듭니다. 그러나 헌법 해석에 참여하는 판사들과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그러한 불평등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평등이 아니며 교리 적 의미에서 깊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의 차원, 우리는 그들에게 엄격한 감시를 제공합니다. 엄격한 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종족의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때 인종 차별의 문제가있는 역사를 감안할 때 최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인종 차별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부가 그렇게하는 것이 좋거나 설득력있는 이유가 더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논쟁은 대법원이 10 년 전 Grutter 대 University of Michigan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교육에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건을 취할 때 명백한 것이되었고 명백 해졌다. 그리고 그 경우 법원은 법률 학교가 법률 학교 수업의 종류를 구축하기 위해 입학에서 인종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득력있는 사례를 만들었 기 때문에 법률 대학 입학에있어 미시간 대학 법대의 인종 사용을지지했습니다. to, 그 최적의 학습 환경을 생산하고 고용주 및 사회의 다른 요소가 원하는 종류의 졸업생을 생산.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인종이 고려 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에 의해 주어진 특히 강력한 정당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균형 조정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권리 원칙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이 어려운 균형을 중재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사가 구성한 것입니다. 균형이 이러한 경쟁 고려 사항들 사이에서 중개 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해 관계의 무게를 재는 방식은 대중의 태도 변화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법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매우 분명하게 바뀝니다. 이 사법 균형, 여러 수준의 조사 도구를 사용한 것은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균형을 깨는 방식도 똑같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특정 이해 관계가 중요 해짐에 따라 특정 사례에서 규모에 적용하는 특정 가중치도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성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최근의 기억 속에서도 갑자기 무시되었던 일부 이해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되는 헌법 적 해석에 확실한 동력을 부여합니다. Thurgood Marshall은 1940 년대와 50 년대 대법원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인종 차별에 대한 헌법 적 이해의 변화를 도왔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이 말을했습니다. |
| As in Marshall's words here, the spectrum of interests clearly show variations in the degree of care with which the court scrutinizes classifications. And here I think it's important what Justice Marshall says. The way the court strikes this balance depends, in his words, on the constitutional and societal importance of the interest adversely affected. Simply put these constitutional doctrines about individual rights have a certain judicial structure but they are not entirely apart from the social structure of the broader American community, and the values and weights that America puts on given interests. Nowhere is Justice Marshall's sentiment more evident in recent years than in the dramatically shifting doctrine that the Supreme Court has articulated involving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protections of same-sex relationships. As recently as 1985, in the case called Bowers versus Hardwick, a majority of the Supreme Court upheld making it a crime for two consenting same sex adults to engage in sexual relations. Less than two decades after Bowers, in 2003 in a case called Lawrence versus Texas,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considered and explicitly rejected Its ruling in Bowers on the permissibility of criminalizing same-sex consenting adult relationships. In Lawrence, Justice Kennedy writing for the court declared the right to choose one's own intimate partner as sacred and undeniable and, wrote an opinion which explicitly overruled the court's prior precedent from only 18 years before. This is a modality we've seen on other occasions through Constitution, Constitutional history, of course the Plessy versus Fergon, Ferguson decision from the 1890s was overturned in Brown versus Board of Education in 1954. And in many other areas, but rarely so rapidly as in the area of the permissibility of same-sex consenting adult relationships, and the speed with which the court overturned its Bowers precedent corresponds with an equally quick shift in public attitudes on the acceptance of same sex relationships, which is today translating into rapidly changing legal norms and constitutional norms in the area of same sex marriage. This is an area that we're more vividly than most, and more rapidly than most, but just as assuredly in other areas we see that the legal work that the court does is not inherently sealed or divorced from the public opinion in the broader society. And this is one of the engines that generates constitutional change. It's not that the constitution is living, but we the people are living. And our changing attitudes clearly inflect and ultimately affect the way that the Court interprets this document. | 여기서 마샬의 말처럼 이해의 스펙트럼은 법원이 분류를 면밀히 조사하는 보살핌의 정도에있어서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샬 법무부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이 균형을 잡는 방법은, 그의 말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영향을받는 이해의 헌법 및 사회적 중요성에 달려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의 교리에는 특정한 사 법적 구조가 있지만 단순히 미국 사회 전체의 사회 구조와 미국이 주어진 관심사에 두는 가치와 무게는 별개가 아닙니다. 마셜 대법원장의 심리는 대법원이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이고 헌법 적 보호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드러낸 교리에서보다 최근 몇 년 동안 더 분명해졌습니다. 1985 년 Bowers 대 Hardwick 사건에서 대법원 대다수는 성행위에 동참하는 두 명의 동의 성인이 범죄로 판결을 내렸음을 인정했습니다. Bowers 사건 이후 2003 년 Lawrence 대 Texas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동성 공동 동의 성인 관계를 범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Bowers의 판결을 고려하고 명시 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을 위해 작성된 케네디 법무부 장관은 로렌스에서 자신의 친밀한 동반자를 신성하고 부인할 수없는 사람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으며 18 년 전 법원의 선례를 명백히 폄하 한 의견을 썼다. 이것은 헌법, 헌법 역사, 물론 플레시 대 퍼거슨 (Fergon vs. Fergon)의 1890 년대 판결에 대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1954 년에 뒤집힌 다른 헌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Bowers 판례를 뒤집은 속도는 동성 간의 동의를 허용하는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성 관념의 수용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똑같이 빠르게 변하는 것과 일치하며, 이는 오늘날 급속한 변화로 동성 결혼의 영역에서 법적 규범과 헌법 규범.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법적 저작은 본질적으로 인봉되거나 넓은 사회에서 여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헌법 변화를 가져 오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하는 태도는 분명히 법원이이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 Finally, after all of this discussion of the Supreme Court and its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it's important to remember as the framers did that all involved in government and society have some role in protecting these basic individual guarantees. Indeed a society that relies exclusively on a group of unelected judges as the sole guarantors of undi, individual rights is risking those rights diminishing in dramatic ways.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areas where individual understandings of rights, such as privacy,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 and very rapidly so today through technological change that the law struggles to keep pace with. In such areas, rights protection will be most effective if the, the more responsive branches of government like the executive branch agencies and the legislature itself are in the forefront of protecting these rights. And sometimes even the justices themselves recognize this, that they are not the best Institution to stand as a bulwark against these rapid technological changes. Justice Alito in the recent, Fourth Amendment case US versus Jones which involved whether a continuous GPS surveillance device attached to a car for many days created a Fourth Amendment violation expressed this notion of institutional competency in the language you see here. For Alito at least, the best solution to privacy concerns may be legislative. And Alito's views are shared by his others on and off the bench, particularly, in areas like this. We've seen it also in the, in areas such as race discrimination where Brown versus Board of Education in 1954 was an iconic and important Supreme Court decision in outlawing segregated schools. But, for the lives of minority individuals in the United States, much greater gains came a decade later with the Civil Rights Act in 1964, a congressional statute, which because backed with the full enforcement apparatus of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worked much greater change in people's lives than the Brown versus Board of Education decision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So this is the last theme to remember as we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rights. The importance of the court in translating and enforcing those rights is that as much as the Court does, we cannot ask the Court to do everything in protecting these rights, and it's important for any Constitutional culture to remember the role of other branches and the public itself in operationalizing and giving shape to these foundational individual guarantees. |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한이 모든 논의와 개인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후에, 정부와 사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개인적 보장을 보호하는 데 어떤 역할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택되지 않은 판사들로만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보증인으로 극적으로 줄어들고있는 권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적 권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압력을받는 지역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오늘날 법률이 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기술 변화를 통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부 기관 및 입법부 자체와 같은 정부의 대응력있는 부서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면 권리 보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판사들도 이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대비하는 방벽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관은 아닙니다. Alito 대법원장은 지난 4 일 수정안에 대해 미국 대 존스 대 미국의 여러 차종의 차량에 부착 된 지속적인 GPS 감시 장치가 수정 헌법 위반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기서 볼 수있는 언어에 대한 제도적 역량의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알리 트 (Alito)에게 최소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입법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ito의 견해는 다른 사람들이 벤치에서 또는 벤치에서, 특히 이와 같은 분야에서 공유됩니다. 우리는 1954 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가 분리 된 학교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중요한 결정이었던 인종 차별과 같은 분야에서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수 민족의 삶에 대해 1964 년에 민권법 (Civil Rights Act)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의회 법령은 연방 집행 기관의 전폭적 인 집행기구로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변화를 겪었 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의 결정보다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이 개인적인 권리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기억해야 할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번역하고 집행하는 데있어 법원의 중요성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없으며 헌법 문화가 다른 지사와 대중의 역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개인적 보장에 대한 운영 및 형태를 부여합니다. |

Part4

|  |  |
| --- | --- |
| Finally, I'll end this segment by talking for a few minutes about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the broader world. You'll recall, from the beginning of this segment that the U.S. constitution is the oldest constitution in the world operating today. It was quite unique when it was framed in 1787. And it has been held up by commentators both in prior centuries and very recently as a model for constitutionalism around the world. To a great extent, this story of influence is accurate, at least in general terms. When the U.S. Constitution was framed in 1787, it was virtually the only written constitution in the world. It was an outlier. And it was viewed as a novel experiment in writing down the rules of the governance. Today, that novel experiment has become the world's norm. Virtually every country today with only a handful of exceptions has a written constitution, has a Supreme Court which exercises some form of judicial review power. And has a culture of both governmental structure and individual rights that mimic, at least faintly, the American Experiment from two centuries ago. So this is in, in one very broad, very general sense, a triumphant story of influence, of written constitutionalism and strong form judicial review around the world. But, nothing's that simple. When we look more carefully at the co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can see the influence of the basic written model, but we see a number of design choices that these other countries have made. Particularly, those countries that have written constitutions within the last 50 or 60 or 70 years that take their constitutions in very different directions than the U.S. model. So, although the U.S. Constitution has been tremendously influential in the general, broad sense in promote, promoting a regime around the world of written constitutionalism. The actual choices other countries have made, have diverged dramatically from the U.S., leaving the U.S. Constitution still quite unique in some ways I'll discuss now. First, as I alluded to earlier, the U.S. Constitution remains one of the most difficult to amend the text in the world. Requiring three-quarters of the subordinate unit's, the states, to agree to anything in order to make textual amendment. This in turn means the U.S. Constitution is largely frozen as it's written with only sporadic episodes of amendment over the past 200 years. And that again requires interpreters like Supreme Court justices to deal with the fact that the text stays the same even if societal attitudes toward that text have changed dramatically. In many other countries, it's easier, to amend the constitution, which leads to more textual change. Which, in turn, might reduce the frequency or need for strong form judicial interpretation, to change constitutional norms. Second, although the US is not alone in being a federal system, recall what I said about power being divided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a number of subunits called here the states. There are clearly other federations in the world,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a national government and some subordinate units, be they states or provinces or other units. The U.S. | 마지막으로, 나는 더 넓은 세상에서 미국 헌법의 역할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함으로써이 부분을 끝낼 것이다. 이 부분의 시작부터 미국 헌법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수천 년 동안 해설자들에 의해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의 헌법에 대한 모델로서지지를 받았다. 상당 부분이 영향의 이야기는 최소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확합니다. 1787 년에 미국 헌법이 틀을 잡았을 때 사실상 세계 헌법이 유일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거버넌스의 규칙을 쓰는 새로운 실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소설 실험은 세계 표준이되었습니다. 거의 예외가 거의없는 오늘날의 모든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법정 재검토 권한을 행사하는 대법원이있다. 2 세기 전의 미국 실험은 적어도 희미하게 모방 된 정부 구조와 개인 권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매우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향력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 서면 헌법주의와 강력한 형식의 사법 심사에서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 세계 다른 국가의 헌법을 더 신중하게 바라 볼 때. 우리는 기본적인 서면 모델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만든 디자인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0 년 또는 60 년 또는 70 년 내에 헌법을 작성한 국가는 미국 모델과 다른 방향으로 헌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이 세계 전반의 체제 헌법을 홍보하고 승진시키는 데있어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 괄목할만한 영향력을 행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실제로 취한 선택 사항은 미국에서 크게 벗어 났으므로 지금 논의 할 몇 가지 점에서 미국 헌법은 여전히 ​​매우 독특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헌법은 여전히 ​​세계의 텍스트를 수정하기가 힘든 중 하나입니다. 하급 단위 국가의 4 분의 3에게 텍스트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합의해야합니다. 이는 곧 지난 200 년간의 산발적 인 수정안으로 작성된 미국 헌법이 대부분 동결 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사와 같은 통역사는 텍스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더라도 텍스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처리해야합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 많은 텍스트가 변경됩니다. 차례로 헌법 규범을 바꾸기 위해 빈번한 양식 사법 해석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이 연방 제도에 홀로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에 대해 국가 정부와 여기에있는 여러 하위 단위로 나뉘어 진다고 말한 것을 상기 해보십시오. 분명히 세계에 다른 연맹이 있으며, 많은 다른 국가에는 주정부 또는 지방 또는 기타 단위로 국가 정부와 일부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미국. |
| is perhaps unique, though, in the disproportionate weight it gives to the states, no matter what the population is. As I said before, Wyoming has the same amount of votes in the Senate as California, despite having only a fraction of its population. Most other legislatures in countries that are federations, and give representation to the sub units, like states or provinces, make some effort, at least, to equalize for, for population. So many scholars think that this is a, an accu, anachronistic, maybe even problematic feature of the US Constitution, and no country has copied it quite as dramatically. Third, although virtually all national constitutions protect a broad swath of individual rights, or at least say they do. Very few give the strong protection to, gun ownership rights, or religious freedom, or even the broad freedom of speech and particularly commercial speech that the U.S. constitution does. So when we look at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to copy in a sense the American Bill of Rights and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a lot of them are copying and editing in the sense that they don't put the second amendment in it. And they don't protect speech in the same ultra robust way that we do. They certainly, most other countries would not protect corporate speech in the way that the US Supreme Court has in, in recent decades. And these are values which, of course, we debate in the American context.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y would just as soon form their constitutional order without some of these elements that we think are very fundamental. next, while every country that sets up a new constitution attempts to do something, or at least says they do, about judicial independence. About creating a court system where judges are free to make decisions without concern for being fired or thrown in jail in, in the extreme case. Almost no country writing constitutions recently chooses to give judges life tenure like we do. At least not Supreme Court judges. Most other countries Supreme Courts have judges sit for eight years or ten years or even 15 years. But they're unwilling to say that a judge gets his or her seat, as long as they keep drawing breath on this Earth. And, many scholars, even of the US Supreme Court, looking at the super long tenure. Sometimes more than 30 or 35 years of some American Supreme Court justices. Have said that this may be, a part of our Constitution that we might reconsider if we could. Now of course it's so difficult to amend I don't anticipate that. Perhaps because of the age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age of the U.S. Constitution, our Supreme Court is still very shy and very reluctant to support other, support and cite, other Supreme courts around the world, considering similar structural or individual rights cases. Many other high courts look to their neighbors or look around the world to colleagues and attempt to get some judicial guidance. Many justices on the U.S. Supreme Court have asserted fairly categorically, that that kind of judicial looking around is, is impermissible, and we're, in that sense they're somewhat unique. | 인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에주는 불균형 한 체중에 있어서는 아마도 독특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와이오밍주는 인구의 일부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캘리포니아와 같은 득표를하고 있습니다. 연맹 국가의 다른 대부분의 입법부는 주 또는 지방과 같은 하위 단위에 대한 대표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인구 동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미국 헌법의 특징이며, 시대 착오적 인, 어쩌면 문제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극적으로 그것을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실상 모든 국가 헌법이 광범위한 개인권을 보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총기 소유권이나 종교의 자유 또는 심지어 미국 헌법이 주장하는 광범위한 언론 자유와 상업적 연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권리 장전 및 개인 권리 보호라는 의미에서 다른 국가가 복사하려고하는 것을 살펴볼 때 두 번째 개정안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복사 및 편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 대법원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지고있는 방식으로 기업 연설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물론 우리가 미국의 맥락에서 논쟁하는 가치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매우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중 일부가 없으면 곧 헌법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 헌법을 제정 한 모든 국가는 사법 독립에 관해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적어도 그렇게한다고 말합니다. 극단적 인 경우 판사가 해고되거나 감옥에 갇힐 염려없이 의사 결정을 내릴 수있는 법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가 헌법은 최근 우리가하는 것처럼 재판관들에게 재임 기간을주기 위해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법원 판사는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 대법원은 판사가 8 년 또는 10 년 또는 심지어 15 년 동안 앉아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사가이 지구상에서 계속 숨을 쉬기 만하면 자신의 자리를 얻는다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 학자, 심지어는 미국 대법원에서도 초장기 재직을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30 년에서 35 년 동안의 미국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 가능한 경우 우리가 재고 할 수있는 헌법의 일부분 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은 미국 대법원의 나이와 미국 헌법 시대로 인해 대법원은 여전히 ​​매우 수줍음을 많이 베풀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대법원이나 개별 권리 사건을 고려하여 전세계의 다른 대법원을지지하고 인용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 다른 많은 고등 법원은 이웃 국가를 바라 보거나 전 세계를 동료들에게 바라보고 사법적인 지침을 얻으려고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많은 판사들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사법 탐구가 용납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으며,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다소 독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 Perhaps even more importantly for the lives of individual citizens, although the U.S. protects lots of individual rights against government action, what we might call negative rights, or negative liberties. The ability to say say to the government you may not throw me in jail for giving this speech. You may not throw me in jail for making these sexual or reproductive choices. Those are called negative liberties. The U.S. Constitution by and large does not protect positive entitlements, positive freedoms: the right to health care, the right to housing, the right to education. And many other national constitutions do, so the U.S. is an outlier in the strong dichotomy that it draws in its constitution, and the court's interpretation between negative liberties against government tyranny and affirmative rights to inputs into one's good life. This is vividly explained in the abortion cases where famously Roe v Wade gives a certain limited right to women to choose to have an abortion at certain periods of the pregnancy. But in other case, less well known Maher v Roe says quite clearly a poor woman can't access government funding to effectuate the abortion right. So there's an, there's a right to say to, to say no to government intrusion. There's no right in the U.S. context, to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that decision. And many countries would find that dichotomy very incongruous, to give a right, but not to give the financial means to effectuate it. As all of this shows the U.S. Constitution is tremendously influential around the world. But, its influence was more in generating this culture of written constitutionalism. Rather than in specifying the exact content of the new constitutions that have emerged in most countries over the last half century. And here there's a certain irony, is the very fact that the U.S. Constitution was so important and so old, kind of made it like an original model of a vehicle or something, where newer designers have taken things in very different directions. So, this boast confirms the influence of the U.S. Constitution in our world. But also shows that there are other choices that other nations have made that we might consider even in our own constitutional order about whether there are, there are better design features that we might think about going forward. I'll conclude in the way I started, namely by focusing on the, the greatest founding father of the Constitution, James Madison. Madison said, What is government itself but the greatest of all reflections on human nature? And this fits with several themes I've tried to bring out in this segment. Over 200 years ago Madison and his colleagues met in Philadelphia a few miles from where I stand here. To produce a canonical text that's remarkable in its innovation, remarkable in its brevity. And remarkable in the number of subjects it tried to cover in relatively few words. But the framers, as evidenced by Madison's quote here, weren't disconnected from the realities of we the people, a phrase they put right there in the constitution. They realized that this text they wrote was not going to interpret itself, it doesn't give easy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it raises. It doesn't contain definitions, it doesn't contain a detailed users guide. And the constitu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culture that we have today, reflects the text that they worked on two centuries ago, but it also reflects the intervening generations and most importantly, the present generations interpretation and life and values that we infus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is not living, but we are, and that's an imperative that ought to guide our interpretation. Thank you. | 미국이 정부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권리, 부정적인 권리 또는 부정적 자유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개인 시민의 삶을 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 말할 수있는 능력은 당신이이 연설을하면서 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선택이나 생식 선택을 할 때 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부정적인 자유라고 부릅니다. 미국 헌법은 긍정적 인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주거권, 교육권 등 긍정적 인 자유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 헌법이 그러 하듯이, 미국은 헌법에 강하게 이분법을 적용한 외계인이며, 정부의 독재에 대한 부정적인 자유와 개인의 선량한 삶에 대한 긍정적 인 권리 사이의 법원의 해석이다. 이것은 Roe v Wade가 임신 기간 중 낙태를 선택할 여성에게 일정한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는 낙태 사례에서 생생하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Maher v Roe가 낙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난한 여성이 정부 기금에 접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침입에 반대한다고 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맥락에서 정부 결정에 대한 재정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은 이분법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조리하지만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 주듯이 미국 헌법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영향력은이 서면 헌법 문화를 창출하는 데 더 컸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장한 새로운 헌법의 정확한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미국 헌법이 매우 중요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운 디자이너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물건을 가져간 차량이나 무언가의 원래 모델과 같은 종류의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이 자랑은 우리 세계에서 미국 헌법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헌법 상 질서조차도 고려해 볼 수있는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고려할 더 나은 디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방식, 즉 헌법의 가장 위대한 창립자 인 제임스 매디슨에 초점을 맞추어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매디슨 장관은 정부 자체는 무엇인가? 그러나 인간 본성에 대한 모든 반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이 분야에서 내놓으려고했던 몇 가지 주제에 부합합니다. 200 년 전 매디슨과 그의 동료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내가 여기 서있는 곳에서 몇 마일 만났습니다. 자사의 혁신에서 주목할만한 정식 텍스트를 제작하려면 간결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피검사자 중 주목할만한 것은 비교적 적은 수의 단어로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의 견적에 의해 입증 된 바와 같이,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현실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바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쓴이 글이 스스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기 된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세한 사용자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있는 헌법과 헌법 문화는 그들이 2 세기 전에 작업 한 텍스트를 반영하지만, 개입 한 세대와 가장 중요하게는 현재 세대의 해석과 삶과 가치를 헌법에 반영합니다. 헌법은 살아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해석을 인도해야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

1. Judges and others wh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U.S. Constitution often examine the following sources to ascertain meaning (choose all that apply): **A,C,D**

A. The text of the operativ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B. The definitions section of the Constitution.~~

C. The contemporaneous understandings of the men who wrote and ratified the Constitution in the late 1700s.

D. Subsequent interpretations and practices by major institutional actors over the past 225 years.

1. 미국 헌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판사 및 기타 사람들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출처를 조사합니다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A. 헌법에 규정 된 운영 규정의 본문.

B. 헌법의 정의 부분.

C. 1700 년대 후반에 헌법을 작성하고 비준 한 사람들의 동시대 이해.

D. 지난 225 년간 주요 기관 행위자에 의한 차후 해석 및 실행.

2. Which of the following exemplifies a debate over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U.S. Constitution’s allocation of authority:

A. Questions about whether Congress or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send the U.S. military into hostilities abroad.

B. A federal executive branch official refusing to testify before Congress on the grounds that her information is legally privileged.

C. An argument that a statute passed by Congres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regulates private conduct that does not substantially affect interstate commerce.

D. Arguments by Supreme Court Justices that Congress has no power to compel them to televise oral arguments.

2. 다음 중 미국 헌법의 권한 할당에 따른 권한의 "수직적"분리에 대한 논쟁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A. 의회 나 대통령이 미군을 해외 적대시로 보낼 수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B. 연방 행정부 관리로서 연방 의회의 정보가 합법적으로 특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증언하기를 거부했다.

**C. 의회에서 통과 된 법안이 주 정부 간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D. 대법원 판사에 의한 의회는 구두 논쟁을 방송하도록 강요 할 권한이 없다.

3.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ccurate statement of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is part of the Constitution’s First Amendment: “Congress shall make no law . .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의회는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거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아야한다. 또는 언론의 자유를 요약하다

A. Government may never enact a statute that limits or prohibits the flow of information in any circumstances;

B.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regulate communications;

C. Congress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regulate speech, but the President is not under this clause;

D. The national government is limited in its ability to regulate communications, but this clause does not apply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

3. 다음 중 헌법 제 1 수정안의 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해석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어느 것입니까 : "의회는 아무런 법률도 제정하지 않습니다. . . 연설의 자유를 줄이는 것 "

**~~A.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 할 수 없습니다.~~**

**B. 주,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는 의사 소통을 규제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C. 의회는 연설을 규제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대통령은이 조항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D. 국가 정부는 통신 규제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이 조항은 주 및 지방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Many aspects of the U.S. Constitution have been adopted by other nations. What is still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A. The U.S. Constitution is written in a single document.**

B. The U.S. Constitution is over 200 years old.

C. The U.S. Constitution is interpreted by an authoritative high court that has the power to overrule popularly-elected government officials.

D. The U.S. Constitution both protects individual rights and structures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rocess.

4. 미국 헌법의 여러 측면이 다른 국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A. 미국 헌법은 단일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B. 미국 헌법은 200 년이 넘었습니다.

C. 미국 헌법은 대중적으로 선출 된 공무원을 제압 할 수있는 권위있는 고등 법원에 의해 해석됩니다.

**~~D. 미국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와 정치 과정을 구성합니다.~~**